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98호

2017. 3. 9.(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6419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	---

[입법예고]

제2017-57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2
제2017-580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2
제2017-58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제2017-58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
제2017-600호 서울특별시 자치현장 조례안 입법예고	15

◆ 고 시

제2017-78호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17
제2017-7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33
제2017-80호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34
제2017-81호 용왕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52
제2017-82호 토지세목(변경) 고시	62
제2017-83호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 고시	64
제2017-84호 세곡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5
제2017-8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대학교)	73
제2017-86호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0

◆ 공 고

제2017-522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91
제2017-523호 낙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91
제2017-52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고	93
제2017-537호 환경건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93
제2017-54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등록취소 전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94
제2017-542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94

제2017-543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95
제2017-550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95
제2017-55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96
제2017-557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98
제2017-571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98
제2017-574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 선정 공고	99
제2017-575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101
제2017-576호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 공고	102

◆ 구 고 시

제2017-30호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105
제2017-29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성동구)	106
제2017-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중랑구)	107
제2017-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성북구)	112
제2017-3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도봉구)	115
제2017-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상계지구)]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노원구)	117
제2017-2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동구)	119

◆ 구 공 고

제2017-199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용산구)	123
제2017-23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광진구)	125
제2017-27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서대문구) ..	126
제2017-402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129
제2017-40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구로구)	130
제2017-2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공고(동작구)	131
제2017-2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공고(동작구)	131
제2017-35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관악구)	132
제2017-313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서초구)	134
제2017-401호 도시계획시설(대모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강남구)	135
제2017-323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재)열람공고(송파구)	139

◆ 사업소고시

제2017-3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40
제2017-4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40

◆ 사업소공고

제2017-4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141
제2017-4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143
제2017-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서초소방서)	148

◆ 기 타

제2017-3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49
제2017-36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49
제2017-3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50
제2017-3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50

자 치 법 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6419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3월 9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1조5,000억 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 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의 업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비상임이사는 공사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회의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와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사회외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용·해임)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용하거나 해임한다.

제3장 사업

제19조(사업의 범위)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3.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시스템 구축, 건설·운영 및 감리사업
 7.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운영 및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법인에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대행사업 및 경비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에 따른다.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운임의 결정) ① 공사는 도시철도 여객으로부터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사는 운임을 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2(부가 운임 징수) ① 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부가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 운임 산정 기준 및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등 세부 사항을 운송약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회계의 원칙) ①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4조(사업계획예산과 결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사업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⑥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공사는 결산이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배당(시 일반회계에 납입)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에서 보전
2. 이익준비금에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6조(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금) 재해복구,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공사에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기채

제28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국내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의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9조(차관)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제30조(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 예산으로 정한 차입한도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제31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3조(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파견공무원의 평정)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 및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 제36조(업무상황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반기·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시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서울교통공사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 제6조, 제10조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문명) 공사의 영문명은 Seoul Metro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서울메트로 사장”을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서울메트로”를 “서울교통공사”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다목 중 “서울메트로”를 “서울교통공사”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5조(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 설치운영) ① 종전의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 및 제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은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설치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도시철도 경영 및 운영 등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공사 설립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설립비용 등) 공사의 통합비용과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해산비용은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각각 부담한다.

제7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공사 설립과 동시에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시행일로부터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공사는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재산을 승계하며,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승계받은 재산은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

시철도공사가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9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0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둔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1~8호선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 및 공공서비스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의 안전운행, 작업자의 안전, 새로운 교통체계의 마련 등을 위해 양공사를 서울교통공사로 통합·정비하고, 동 공사의 자본금,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안전·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되, 자본금은 21조 5,000억원으로 함(제1조 및 제3조)
- 나. 기존 조례에 규정된 사업의 범위 중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에 따른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정하고 국내외 도시철도관련 건설사업을 추가함 (제19조)
- 다. 시장은 실질적인 통합 작업을 위해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설치·운영하고 최초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에 둠(부칙 5조 및 10조)
- 라.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부칙 제3조 및 제8조)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79호****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기구 정비, 부서간 업무 이관 등 기구조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가. 기구 개편 및 부서간 업무 조정
 - 민생경제과를 공정경제과로 개편하고, 본부 내 부서 직제순 변경 및 부서간 업무 조정
 - 정보기획관 업무 운영 효율화를 위한 부서간 업무 이관
 - 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
 - 창조경제기획관을 경제기획관으로, 서울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를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로 명칭 변경
 - 다. 실·본부·국 및 부서 직급체계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2133-6732, FAX : 2133-0822, E-mail : 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80호**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행정수요 증대 분야 인력 재배치 및 직무특성을 고려한 직급 조정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공무원 총 정원 변경 없이(총 정원 17,521명 불변) 정원의 직급·직렬 조정을 통해 행정수요 증대 분야 인력 보강 및 직무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2133-6732, FAX: 2133-0822, E-mail: 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8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기구 수 확대, 직속기관·사업소 신규 개관에 따른 기구 개편 및 한시기구 정비를 통해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핵심과제 중점 실행을 위한 실·본부·국 개편사항 반영

- 평생학습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추진력 강화 필요에 따른 ‘평생교육국’ 신설
- 서울로 7017 운영기능 강화를 위한 소관 기구 변경

나. 직속기관·사업소 개편에 따른 소속기관 신설

- 서울식물원 부분개원에 따른 사업소 신설
- 대시민 소방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성동소방서 신설

다.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2133-6732, FAX: 2133-0822, E-mail: 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82호**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일반직 및 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연구직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7,521명에서 17,603명으로 82명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수요 증대 분야 대응을 위한 증원 및 관리기관 이관

- 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연구직 증원(+4명)
- 서울식물원 개관 등에 따른 사업소 인력 증원(+15명)

- 성동소방서 개서에 따른 소방공무원 증원(+56명)
- 시립대학교 외국인 교원 확충, 박사과정 신설 등 교육공무원 증원(+7명)
- 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 조정
 - 관서신설 등 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기준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2133-6732, FAX: 2133-0822, E-mail: 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600호

서울특별시 자치현장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치현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시민의 시정참여 권리를 명시하여 시정의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자치권을 재확인하여 자치권의 회복을 선언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의 책무 및 행정운영의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법령 등 헌법의 하위규범은 헌법상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부합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이에 위반하는 법령 등에 대한 시의 시정 요구 의무를 규정(안 제4조)
- 다.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공청회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참여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는 등 시민의 시정참여권을 규정(안 제6조)

라.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및 역사문화 및 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시의 책무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시의 고유한 자치사무 처리권한 및 시와 중앙정부의 관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시의 자율성과 창의성 및 지역적 특수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을 재확인(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시의 자치권을 이루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를 규정(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헌법과 법률 및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내용 명시

2) 중앙정부의 감독권한 등은 시의 고유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

바. 공동번영과 상호협력을 위한 중앙정부 및 국내외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의 무 등을 규정(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신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 2133-6691, FAX 2133-0821, E-mail : jylee2687@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8호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2)로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I.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50번지 일대
- 면 적 : 8,671.1㎡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17년 2월 28일

3. 사업의 종류 :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코리아신탁(주)
- 대표자 성명 : 최 익 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 법인등록번호 : 110111-2937831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	(평)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한강로 2가	2	201	철	40.7	12.3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 혜성2빌딩)	100%	없음	-	-
2		2	202	철	20.8	6.3						
3		2	203	철	94.9	28.7						
4		2	204	철	189.8	57.4						
5		2	205	철	154.4	46.7						
6		2	206	철	80.3	24.3						
7		2	207	철	28.8	8.7						
8		2	208	철	29.8	9.0						
9		2	209	철	25.4	7.7						
10		2	210	철	47.3	14.3						
11		2	211	철	18.8	5.7						
12		2	212	철	22.1	6.7						
13		2	213	철	20.8	6.3						
14		2	214	철	93.6	28.3						
15		2	215	철	24.1	7.3						
16		2	216	철	133.2	40.3						
17		2	404	철	26.7	8.1						
18		2	218	철	182.1	55.1						
19		2	408	철	657.2	198.8						
20		2	422	철	15.4	4.7						
21		2	220	철	1,756.1	531.2						
22		2	409	철	35.3	10.7						
23		2	410	철	1,065.5	322.3						
24		2	292	철	241.3	73.0						
25		2	411	철	131.9	39.9						
26		2	412	철	101.6	30.7						
27		2	413	철	73.7	22.3						
28		2	414	철	62.1	18.8						
29		2	415	철	58.2	17.6						
30		2	416	철	45.9	13.9						
31		2	304	철	178.2	53.9						
32		2	417	철	45.6	13.8						
33		2	418	철	43.5	13.2						
34		2	419	철	152.2	46.0						
35		2	345	철	178.2	53.9						
36		2	403	철	594.1	179.7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	(평)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37	한강로 2가	2	356	대	91.4	27.6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 혜성2빌딩)	100%	없음	-	-
38		2	359	도	5.1	1.5						
39		2	299	대	102.1	30.9						
40		2	355	도	10.2	3.1						
41		2	357	대	92.9	28.1						
42		2	361	도	3.6	1.1						
43		2	350	101호	16.5	5.0						
44		2	358	202호	22.9	6.9						
45		2	358	301호	22.9	6.9						
46		2	358	302호	22.9	6.9						
47		2	348	대	118.3	35.8						
48		2	347	대	102.5	31.0						
49		2	350	102호	16.5	5.0						
50		2	358	201호	22.9	6.9						
51		2	350	202호	16.5	5.0						
52		2	350	401호	6.4	1.9						
53		2	350	201호 1/2지분	8.3	2.5						
54		2	300	대	91.3	27.6						
55		2	360	도	5.3	1.6						
56		2	295	대	115.0	34.8						
57		2	296	대	112.4	34.0						
58		2	362	도	4.8	1.5						
59		2	350	201호 1/2지분	8.3	2.5						
60		2	350	301호	16.5	5.0						
61		2	350	302호	16.5	5.0						
62	한강로 1가	246	1	대	154.4	46.7	김용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1-1 신반포3지구 아파트 23-205	100%	성남세 무서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78,000,000원 (채무자:김용진)	
63		246	2	대	174.0	52.6						
64		247	1	대	29.8	9.0						
65		247	2	대	26.4	8.0						
66		248		대	395.4	119.6						
67	한강로 2가	2	307	대	169.3	51.2	김용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1-1 신반포3지구 아파트 23-205	100%	성남세 무서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78,000,000원 (채무자:김용진)
계					8,671.1	2,623.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 일자	규모			소유 자	관계인			관련 지번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한강로1가	246	1	대	제조업소	목조	1959-12-08	72.73	0	1					
2	한강로1가	246	1	대	주택	목조	1959-12-08	327.28	1	2					
3	한강로1가	248	0	대	사무소	목조	1959-07-20	197.36		2					
4	한강로1가	248	0	대	사무소	목조	1959-07-20	41.65		1					
5	한강로1가	248	0	대	사무소	세멘브릭조	1959-07-20	103.25		1					
6	한강로2가	2	43	철	공장	목조	1958-04-16	229.65	0	1					
7	한강로2가	2	204	철	창고, 사무실	목조	1958-04-16	113.39	0	1					
8	한강로2가	2	215	철	공중변소	에프알피	1988-04-22	3.60	0	1					
9	한강로2가	2	220	철	창고	목조	1962-03-05	1071.08	0	1					
10	한강로2가	2	295	대	주택	연와조	1976-06-20	150.90	1	2					
11	한강로2가	2	296	대	주택	연와조	1975-12-29	122.94	1	2					
12	한강로2가	2	299	대	주택	연와조	1975-07-25	127.84	1	2					
13	한강로2가	2	300	대	주택	세멘벽돌조	1977-11-23	66.58	1	1					
14	한강로2가	2	304	철	청소차고	부록조	1978-09-13	123.64	0	1				2-305, 306, 308, 309, 310, 311, 221, 274, 275	
15	한강로2가	2	347	대	주택	연와조	1975-07-18	69.13	1	1					
16	한강로2가	2	348	대	주택	연와조	1976-02-16	133.92	1	2					
17	한강로2가	2	350	대	사무소	철근콘크리트	2008-03-17	186.52	0	4					
18	한강로2가	2	356	대	주택	세멘벽돌조	1977-11-23	66.58	1	1					
19	한강로2가	2	357	대	주택	세멘벽돌조	1977-11-23	66.58	1	1					
20	한강로2가	2	358	대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	2007-05-08	87.81	0	3					
계								3,362.43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 일대	3,490,888.0	서울시고시 제1995-53호 (1995.3.8)

2)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일대	8,669.7	-
변경 (신설)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일대	8,671.1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면적(㎡)	결정(변경)사유
-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8,671.1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신설함 - 측량성과에 의한 면적 변경[증] 1.4㎡]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8층 임대주택과(02-2133-4934)와 용산구청 7층 주택과(02-2199-73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50번지 일대
- 면 적 : 8,671.1㎡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생활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 칭 : 코리아신탁(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10층)
- 대표자 성명 : 최 익 중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 ~ 2020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및 주택기금융자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7,037.2	81.2	임대주택용지
기반시설용지	1,633.9	18.8	도로용지
합 계	8,671.1	100.0	-

※ 도로는 설치 및 조성 후 서울시에 무상귀속되며, 기반시설 공공기여로 인정(기부채납)

5. 인구·주택수용계획

1) 수용인구 : 2,408인

2) 주택건설계획 : 1,086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고
공공 임대주택	19 TYPE	128	11.8	128	5.3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39A TYPE	97	8.9	257	10.7	
	39B TYPE	98	9.0	196	8.1	
	소 계	323	29.7	581	24.1	
기업형 임대주택	19 TYPE	128	11.8	128	5.3	
	39A TYPE	71	6.5	188	7.8	
	39B TYPE	136	12.5	272	11.3	
	44 TYPE	64	5.9	170	7.0	
	48 TYPE	66	6.1	198	8.3	
	49A TYPE	34	3.1	90	3.8	
	49B TYPE	232	21.4	696	28.9	
	49C TYPE	32	3.0	85	3.5	
	소 계	763	70.3	1,827	75.9	
합 계		1,086	100.0	2,408	100.0	-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 도로	750 (40)	삼각지 광장	원효로1가	일반 도로	내고제23호 (52.03.25)	백범로
변경	대로	1	1	35~ 37	주간선 도로	750 (40)	삼각지 광장	원효로1가	일반 도로	내고제23호 (52.03.25)	백범로 확폭
기정	중로	1	4	20~ 30	보조간선 도로	765 (177)	한강로1가 (대로1-1)	한강로2가 (대로2-73)	일반 도로	서고제229호 (01.7.10)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25 (37)	한강로1가 (광로3-9)	한강로2가 (중로1-1)	일반 도로	서고제229호 (01.7.10)	

※ 연장의 ()는 지구 내에 해당하는 사항임

2) 공공청사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일대	건축연면적 6,110.6㎡	건축물 기부채납 (위치 : 지하1층, 지상2층)

※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는 설치 후 서울시에 무상귀속되며, 기반시설 공공기여로 인정(기부채납)

- 공공기여 세부계획(관리부서, 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기여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운용기준」 준용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사업지 내 자연 순환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보도·광장 등의 포장면은 지양하며 우수·투수 및 저장을 위한 투수포장(틈새투수포장)을 실시하여 생태면적을 최대 확보, 비오톱 향상을 도모함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살수설비, 세륜 시설, 가배수로, 침사지 등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계획·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 지구 내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단지 조성

2) 탄소저감계획

가) 탄소흡수림 조성

- 사업지의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탄소흡착 및 상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사업지구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 일대	3,490,888.0	서울시고시 제1995-53호 (1995.3.8)

나)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일대	8,669.7	-
변경 (신설)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일대	8,671.1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면적(㎡)	결정(변경)사유
-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8,671.1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신설함 - 측량성과에 의한 면적 변경[증] 1.4㎡]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669.7	증) 1.4	8,671.1	100.0
일반상업지역	587.6	증) 6,627.7	7,215.3	83.2
제3종일반주거지역	8,082.1	감) 6,626.3	1,455.8	16.8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용산구 한강로2가 2-345일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일반상업 지역	6,627.7	-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함 - 측량성과에 의한 면적 변경

(2) 용도지구 결정 : 변경없음

(3)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 도로	750 (40)	삼각지 광장	원호로1가	일반 도로	내고제23호 (52.03.25)	백범로
변경	대로	1	1	35~ 37	주간선 도로	750 (40)	삼각지 광장	원호로1가	일반 도로	내고제23호 (52.03.25)	백범로 확폭
기정	중로	1	4	20~ 30	보조간선 도로	765 (177)	한강로1가 (대로1-1)	한강로2가 (대로2-73)	일반 도로	서고제229호 (01.7.10)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25 (37)	한강로1가 (광로3-9)	한강로2가 (중로1-1)	일반 도로	서고제229호 (01.7.10)	

※ 연장의 ()는 지구 내에 해당하는 사항임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	대로1-1	·도로폭 변경 : 35m → 35~37m	·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백범로 2m 확폭 계획에 따라 대상지 내 도로 폭원 변경

(2) 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획지에 관한 사항

(1)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1	용산구 한강로2가 2-350번지 일대	7,049.3	감) 12.1	7,037.2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획지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획지1	·면적 변경 : 7,049.3㎡ → 7,037.2㎡	·측량성과에 의한 면적 변경

(2)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건축물 용도
기정	권장용도	전층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지상부만 인정)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층	• 휴게음식점, 소매점
	불허용도	전층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미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1층	• 자동차 전시장, 금융업소
변경	지정용도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 단, 지하1층, 지상1·2층 비주거용도 설치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지상부만 인정)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미술소, 안마원 및 단란주점 •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제외)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지정용도 : 공동주택(주거복합) 및 비주거용도 설치사항 신설 • 권장용도 : 업무시설 삭제, 근린생활시설 추가 • 불허용도 :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제외) 추가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정용도로 결정 • 공공업무시설을 제외한 업무시설은 불허용도로 지정하여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 도입을 불허함

(2)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변 경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50%이하 • (패키지)허용용적률 : 450%이하 • 상한용적률 : 500%이하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 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적용	• 기본용적률 : 680%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적용
높 이	• 최고높이 100m 이하 ※ 우수디자인으로 건축심의 인정시 최고높이 120m이하로 완화 적용	• 최고높이 120m 이하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용적률 변경 : 기준 250 / 허용 450 / 상한 500% → 기본 680% / 상한 법정용적률 •높이기준 변경 : 100m 이하 → 120m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용함 •높이기준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상 최대 허용범위인 120m 이하로 적용하여 통경축 확보 등 건축계획을 수립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유형	인센티브 항목			완 화 내 용	비 고
기정	규제형	대지내 공지	건축 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1.2	
	유도형	건축물 용 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총 건축면적) × a	·기타권장용도 : a=0.2 ·업무시설 : a=0.3 ·노유자시설 : a=0.4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a	·피로티구조 : a=0.5 ·개방형구조 : a=1.5
		건축물형태 및 외관		건축심의시 우수디자인 인정시	기준용적률 × 0.05	
				건폐율 제한	기준용적률 × a	·35이상 40%미만 : a=0.05 ·35%미만 : a=0.10

※ 규제형 인센티브는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시 모두 반영하여야 함

※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50%이내에서 적용

구분	사업조건 항목		내 용	완화내용	비 고
변경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 · 제공비율	· 공공기여율 25%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포 함)	기본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주택 건설기준	비주거비율	·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미적용 － 주거 : 비주거 = 9 : 1 적용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 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 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완화항목 변경 :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지침 →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용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 분	지 침 내 용
건축한계선	· 백범로변 : 건축한계선 3m · 이면도로 및 그 외 대지경계 : 건축한계선 3m, 6m
차량진출입불허구간	· 대로1-1 : 가각부로부터 25m · 중로1-4 : 전면부 · 중로3-5 : 가각부로부터 10m
보차혼용통로	· 대상지 북측 건축한계선(6m)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차혼용통로 조성

바) 공공기여 계획

구 분	면 적	기부채납 내용	기부채납 면적	비 고 ^{주)}
공공임대주택	건축면적 22,819.4㎡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1,566.0㎡	18.0%
기반시설(도로)	부지면적 1,633.9㎡	도로 설치 및 제공	1,633.9㎡	18.8%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	건축면적 6,110.6㎡	공공업무시설(구분지상권) 및 부속토지	1,247.0㎡	14.3%

주) 전체 구역면적(8,671.1㎡)에 대한 기부채납(순부담) 비율임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3. 방재계획

1) 호우재해

- 사업지는 내수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임
- 공사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 운영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침투시설(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을 계획

2) 사면재해

- 지하굴토 공사시 토압의 증대, 진동 등으로 인한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연속벽 공법으로 흠막이를 실시토록 계획
- 공사시 건축 슬라브 지지 공법을 적용하여 단계별 굴착 계획

3) 지반 및 지진재해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 지진 등 재난발생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	(평)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한강로 2가	2	201	철	40.7	12.3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 혜성2빌딩)	100%	없음	-	-
2		2	202	철	20.8	6.3						
3		2	203	철	94.9	28.7						
4		2	204	철	189.8	57.4						
5		2	205	철	154.4	46.7						
6		2	206	철	80.3	24.3						
7		2	207	철	28.8	8.7						
8		2	208	철	29.8	9.0						
9		2	209	철	25.4	7.7						
10		2	210	철	47.3	14.3						
11		2	211	철	18.8	5.7						
12		2	212	철	22.1	6.7						
13		2	213	철	20.8	6.3						
14		2	214	철	93.6	28.3						
15		2	215	철	24.1	7.3						
16		2	216	철	133.2	40.3						
17		2	404	철	26.7	8.1						
18		2	218	철	182.1	55.1						
19		2	408	철	657.2	198.8						
20		2	422	철	15.4	4.7						
21		2	220	철	1,756.1	531.2						
22		2	409	철	35.3	10.7						
23		2	410	철	1,065.5	322.3						
24		2	292	철	241.3	73.0						
25		2	411	철	131.9	39.9						
26		2	412	철	101.6	30.7						
27		2	413	철	73.7	22.3						
28		2	414	철	62.1	18.8						
29		2	415	철	58.2	17.6						
30		2	416	철	45.9	13.9						
31		2	304	철	178.2	53.9						
32		2	417	철	45.6	13.8						
33		2	418	철	43.5	13.2						
34		2	419	철	152.2	46.0						
35		2	345	철	178.2	53.9						
36		2	403	철	594.1	179.7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	(평)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37	한강로 2가	2	356	대	91.4	27.6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 혜성2빌딩)	100%	없음	-	-
38		2	359	도	5.1	1.5						
39		2	299	대	102.1	30.9						
40		2	355	도	10.2	3.1						
41		2	357	대	92.9	28.1						
42		2	361	도	3.6	1.1						
43		2	350	101호	16.5	5.0						
44		2	358	202호	22.9	6.9						
45		2	358	301호	22.9	6.9						
46		2	358	302호	22.9	6.9						
47		2	348	대	118.3	35.8						
48		2	347	대	102.5	31.0						
49		2	350	102호	16.5	5.0						
50		2	358	201호	22.9	6.9						
51		2	350	202호	16.5	5.0						
52		2	350	401호	6.4	1.9						
53		2	350	201호 1/2지분	8.3	2.5						
54		2	300	대	91.3	27.6						
55		2	360	도	5.3	1.6						
56		2	295	대	115.0	34.8						
57		2	296	대	112.4	34.0						
58		2	362	도	4.8	1.5						
59		2	350	201호 1/2지분	8.3	2.5						
60		2	350	301호	16.5	5.0						
61		2	350	302호	16.5	5.0						
62	한강로 1가	246	1	대	154.4	46.7	김용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1-1 신반포3지구 아파트 23-205	100%	성남 세무서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78,000,000원 (채무자:김용진)
63		246	2	대	174.0	52.6						
64		247	1	대	29.8	9.0						
65		247	2	대	26.4	8.0						
66		248		대	395.4	119.6						
67	한강로 2가	2	307	대	169.3	51.2						
계					8,671.1	2,623.0	-					

2) 지장물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 일자	규모			소유 자	관계인			관련 지번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한강로1가	246	1	대	제조업소	목조	1959-12-08	72.73	0	1					
2	한강로1가	246	1	대	주택	목조	1959-12-08	327.28	1	2					
3	한강로1가	248	0	대	사무소	목조	1959-07-20	197.36		2					
4	한강로1가	248	0	대	사무소	목조	1959-07-20	41.65		1					
5	한강로1가	248	0	대	사무소	세멘브력조	1959-07-20	103.25		1					
6	한강로2가	2	43	철	공장	목조	1958-04-16	229.65	0	1					
7	한강로2가	2	204	철	창고, 사무실	목조	1958-04-16	113.39	0	1					
8	한강로2가	2	215	철	공중변소	에프알피	1988-04-22	3.60	0	1					
9	한강로2가	2	220	철	창고	목조	1962-03-05	1071.08	0	1					
10	한강로2가	2	295	대	주택	연와조	1976-06-20	150.90	1	2					
11	한강로2가	2	296	대	주택	연와조	1975-12-29	122.94	1	2					
12	한강로2가	2	299	대	주택	연와조	1975-07-25	127.84	1	2					
13	한강로2가	2	300	대	주택	세멘벽돌조	1977-11-23	66.58	1	1					
14	한강로2가	2	304	철	청소차고	부록조	1978-09-13	123.64	0	1					2-305, 306, 308, 309, 310, 311, 221, 274, 275
15	한강로2가	2	347	대	주택	연와조	1975-07-18	69.13	1	1					
16	한강로2가	2	348	대	주택	연와조	1976-02-16	133.92	1	2					
17	한강로2가	2	350	대	사무소	철근콘크리트	2008-03-17	186.52	0	4					
18	한강로2가	2	356	대	주택	세멘벽돌조	1977-11-23	66.58	1	1					
19	한강로2가	2	357	대	주택	세멘벽돌조	1977-11-23	66.58	1	1					
20	한강로2가	2	358	대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	2007-05-08	87.81	0	3					
계								3,362.43							

3) 토지취득 방법 : 구역면적의 98.05%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소유이며, 개인부지는 매수협의를 통해 진행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전면 철거 후 신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 분	위 치	시설규모	비 고
도 로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일대	1,633.9㎡	- 3개 노선(일반도로(대로, 중로) - 기존 확장 및 이면도로 신설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일대	건축연면적 6,110.6㎡	- 위치 : 지하1층, 지상2층

나) 계획기준 및 근거

- 공공기여 내용 : 도로 및 공공업무시설 설치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세부기준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주택법 및 건설기준 관리규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인 용산구청 주택과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공급면적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고
	면적(㎡)	구성비(%)			
합 계	8,671.1	100.0	-	-	-
주택건설용지	7,037.2	81.2	자체사용	승인후	-
기반시설용지	1,633.9	18.8	서울시	승인후	공공기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용산구 한강로2가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코리아신타(주)(대표자 : 최 익 중)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4. 사업의 시행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0년
5. 사업개요
 -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50번지 일대

- 나. 대지면적 : 7,037.2m²
- 다. 건폐율: 57.52% (건축면적: 4,047.54m²)
- 라. 용적률 : 962.25%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67,715.18m²)
- 마. 용 도 : 공동주택(공공임대 323세대/민간임대 763세대),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 바. 규 모 : 2개동, 지하7층/지상35·37층, 연면적 99,947.85m²
-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소방법 등

6. 기타사항

- 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0호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02.05)로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6호(2009.03.19)로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53호(2009.04.09)로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7호(2009.08.20)로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07호(2009.10.22)로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90호(2010.05.20)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82호(2011.12.15)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46호(2012.09.13)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67호(2012.10.11)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호(2013.02.07)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27호(2013.04.25)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57호(2013.8.1)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7호(2013.10.24)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 (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1호(2013.11.28)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제2014-412호(2014.12.4)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제2016-54호(2016.2.25)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제2016-72호(2016.3.17)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제2016-245호(2016.8.11)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된 서대문구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같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서대문구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1-3구역 변경사항 반영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900,178.8	-	900,178.8	100.00
주거 용지	소 계	510,659.6	-	510,659.6	56.73
	단독주택	5,569.0	-	5,569.0	0.62
	공동주택	459,106.8	-	459,106.8	51.00
	근린생활시설	5,332.9	-	5,332.9	0.59
	종교시설	40,650.9	-	40,650.9	4.52
상업/업무		55,376.8	-	55,376.8	6.15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334,142.4	-	334,142.4	37.12
	공공청사	5,084.9	-	5,084.9	0.56
	문화/복지시설	7,686.6	-	7,686.6	0.85
	학교시설	82,916.9	-	82,916.9	9.21
	공 원	68,367.1	감)16.2	68,350.9	7.60
	녹 지	21,852.2	-	21,852.2	2.43
	공공공지	주1)12,556.0	-	12,556.0	1.39
	도 로	128,591.9	증)16.2	128,608.1	14.29
	철 도	6,950.0	-	6,950.0	0.77
광 장		136.8	-	136.8	0.02

주1) 기정고시(서고제2016-54호) 착오기재 정정(12,531.9㎡→12,556.0㎡)

- 2) 인구·주택수용 계획(35,284인 / 13,068세대) : 변경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1-3구역 변경사항 반영

구 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	90,219.3	감)16.2	90,203.1	-
공원	소계	10	68,367.1	감)16.2	68,350.9	-
	도시자연공원	1	209.0	-	209.0	-
	근린공원	2	56,268.7	-	56,268.7	-
	문화공원	1	690.0	-	690.0	-
	어린이공원	4	9,464.5	-	9,464.5	-
	소공원	2	1,734.9	감)16.2	1,718.7	-
녹지	소계	4	21,852.2	-	21,852.2	-
	연결녹지	2	13,399.1	-	13,399.1	-
	경관녹지	2	8,453.1	-	8,453.1	-

-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부문(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기타 계획 : 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북아현 1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1-3구역 변경사항 반영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244,820.8	-	244,820.8	100.00	-
정비가반 시설 등	소 계	82,523.0	-	82,523.0	33.71	-
	도 로	38,555.1	증)16.2	38,571.3	15.76	-
	공 원	19,202.1	감)16.2	19,185.9	7.83	-
	녹 지	16,164.9	-	16,164.9	6.60	-
	공공공지	4,362.9	-	4,362.9	1.78	-
	공공청사	1,671.9	-	1,671.9	0.68	-
	문화복지시설	2,419.0	-	2,419.0	0.99	-
	학 교	10.3	-	10.3	0.01	-
	광 장	136.8	-	136.8	0.06	-
택 지 (획 지)	소 계	162,297.8	-	162,297.8	66.29	-
	1-1-1	47,173.3	-	47,173.3	19.27	-
	1-1-2	3,311.7	-	3,311.7	1.35	-
	1-1-3	2,418.0	-	2,418.0	0.99	-
	1-1-4	215.0	-	215.0	0.09	-
	1-2-1	20,848.0	-	20,848.0	8.51	-
	1-2-2	17,238.6	-	17,238.6	7.04	-
	1-2-3	610.7	-	610.7	0.25	-
	1-3-1	28,083.1	-	28,083.1	11.47	-
	1-3-2	19,626.7	-	19,626.7	8.02	-
	1-3-3	12,721.8	-	12,721.8	5.20	-
	1-3-4	8,228.3	-	8,228.3	3.36	-
	1-3-5	1,822.6	-	1,822.6	0.74	-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1-3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 철도, 공원의 변경없음

☐ 도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1	(2)	20	집산 도로	982 (274)	북아현동 138-24	북아현동 187-18 (160-6)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514 (405)	북아현동 176-114	대현동 65-16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9)	12	국지 도로	254	북아현동 176-87	북아현동 176-111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331 (90)	북아현동 216-43	북아현동 209-20 (229-2)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265	북아현동 221-16	북아현동 160-4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1	(3)	20	집산 도로	954 (531)	북아현동 251-70	북아현동 산1-241 (176-51)	일반 도로		총고제903호 (39.11.18)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144	북아현동 240-2	대현동 65-16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261	북아현동 221-2	북아현동 240-2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287	북아현동 153-25	북아현동 220-11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147	북아현동 154-4	북아현동 148-19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변경	중로	3	(4)	12	집산 도로	147	북아현동 154-4	북아현동 148-19	일반 도로			시점부 형상변경
기정	중로	1	(7)	20	국지 도로	17	북아현동 (중(집)1-(2))	북아현동 170-1	일반 도로		서고제382호 (11.12.15)	한성중 · 고교 진출입로
기정	소로	3	(5)	6	일반 도로	91	북아현동 (중(집)1-(1))	북아현동 215-95	일반 도로		서고제246호 (12.9.13)	북성교육문화원 주차장진출입로

주) 연장 및 위치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4)	중로 3-(4)	• 형상 및 면적변경 - A : 증)16.2㎡	• 아현역 지하철 ①번출입구 이설 설치에 따른 시점부 형상 및 면적변경

주)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아현동정차장	도시철도	경기공전앞			230	3,910.0 (182.8)	-	아현역 - 소공원⑦ 43㎡ 중복결정
변경	1	아현동정차장	도시철도	경기공전앞			230	3,985.6 (228.4)	건고232호 (77.12.1)	아현역 -소공원⑦ 78.4㎡ 중복결정

주) 면적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 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아현동정차장	• 형상 및 면적변경 - A : 증)75.6㎡ (증45.6㎡) • 소공원⑦ 중복결정 면적변경 - A : 증)35.4㎡	• 아현역 지하철 ①번출입구 이설 설치에 따른 형상 및 면적변경

□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너른바위 공원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216-37일대	2,596.2	-	2,596.2	서고제38호 (08.2.5)	
변경	7	굴레방 쉼터	소공원	북아현동 136-3일대	578.9	감)16.2	562.7	서고제38호 (08.2.5)	아현역철도(78.4㎡)와 중복결정
기정	9	북주산 공원	근린공원	북아현동 113-61일대 (176-25일대)	39,039.0 (11,429.0)	-	39,039.0 (11,429.0)	서고제38호 (08.2.5)	열공급설비 (3,655.9㎡) 및 경의선철도 (1,979.0㎡)와 중복결정
기정	11	북아현4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216-59일대	2,357.2	-	2,357.2	서고제382호 (11.12.15)	
기정	12	북아현5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147-48일대	2,240.8	-	2,240.8	서고제382호 (11.12.15)	

주)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굴레방쉼터	• 변경 - A : 감) 16.2㎡ • 중복결정면적 증가 - A : 증) 35.4㎡	• 아현역 지하철①번출구 이설에 따른 공원형태 및 면적 변경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북아현 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다. 북아현 1-2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라. 북아현 1-3구역(주택재개발사업)

-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06,645.8	－	106,645.8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6,163.3	－	36,163.3	34.0	
	도 로	19,416.8	증)16.2	19,433.0	18.2	
	공 원	11,208.6	감)16.2	11,192.4	10.5	
	공공공지	2,959.4	－	2,959.4	2.8	
	공공청사	1,671.9	－	1,671.9	1.6	
	학 교	10.3	－	10.3	0.1	
	녹 지	896.3	－	896.3	0.8	
택 지 (획 지)	소 계	70,482.5	－	70,482.5	66.0	
	1-3-1	28,083.1	－	28,083.1	26.3	
	1-3-2	19,626.7		19,626.7	18.4	
	1-3-3	12,721.8	－	12,721.8	11.9	
	1-3-4	8,228.3		8,228.3	7.7	
	1-3-5	1,822.6		1,822.6	1.7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철도, 공원 외 변경없음

☐ 도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265	북아현동 221-16	북아현동 160-4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1	(2)	20	집산 도로	982 (274)	북아현동 138-24	북아현동 187-18 (160-6)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
기정	중로	1	(3)	20	집산 도로	954 (452)	북아현동 251-70	북아현동 산1-241 (251-73)	일반 도로		총고제903호 (39.11.18)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514 (104)	북아현동 176-114 (대현동 65-1)	대현동 65-16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144	북아현동 240-2	대현동 65-16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261	북아현동 221-2	북아현동 240-2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287	북아현동 153-25	북아현동 220-11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147	북아현동 154-4	북아현동 148-19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
변경	중로	3	(4)	12	집산 도로	147	북아현동 154-4	북아현동 148-19	일반 도로			시점부 형상변경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331 (90)	북아현동 216-43	북아현동 209-20 (229-2)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1	(7)	20	국지 도로	17	북아현동 (중(집)1-(2))	북아현동 170-1	일반 도로		서고제382호 (12.11.15)	한성중고교 진출입로

주) 연장 및 위치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4)	중로 3-(4)	• 형상 및 면적변경 - A : 증)16.2㎡	• 아현역 지하철 ①번출입구 이설 설치에 따른 시점부 형상 및 면적변경

주)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아현동정차장	도시철도	경기공전앞			230	3,910.0 (182.8)	건고232호 (77.12.1)	아현역 - 소공원⑦ 43㎡ 중복결정
변경	1	아현동정차장	도시철도	경기공전앞			230	3,985.6 (228.4)	-	아현역 -소공원⑦ 78.4㎡ 중복결정

주) 면적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 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아현동정차장	• 형상 및 면적변경 - A : 증) 75.6㎡ (증45.6㎡) • 소공원⑦ 중복결정 면적변경 - A : 증) 35.4㎡	• 아현역 지하철 ①번출입구 이설 설치에 따른 형상 및 면적변경

□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너른바위 공원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216-37일대	2,596.2	-	2,596.2	서고제38호 (08.2.5)	
변경	7	굴레방쉼터	소공원	북아현동 136-3일대	578.9	감) 16.2	562.7	서고제38호 (08.2.5)	아현역철도(78.4㎡)와 중복결정
기정	9	북주산 공원	근린공원	북아현동 113-61일대 (176-25일대)	39,039.0 (3,435.5)	-	39,039.0 (3,435.5)	서고제38호 (08.2.5)	열공급설비 (3,655.9㎡) 및 경의선철도 (1,979.0㎡)와 중복결정
기정	11	북아현4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216-59일대	2,357.2	-	2,357.2	서고제382호 (11.12.15)	
기정	12	북아현5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147-48일대	2,240.8	-	2,240.8	서고제382호 (11.12.15)	

주)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굴레방쉼터	• 변경 - A : 감) 16.2㎡ • 중복결정면적 증가 - A : 증) 35.4㎡	• 아현역 지하철①번출구 이설에 따른 공원형태 및 면적 변경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마. 북아현 2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바. 북아현 3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사.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촉진구역별 건축계획) : 변경없음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기정)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40	9,725	143,530	8	4,225	83,681	11	1,212	14,690	21	4,288	45,159
대로	0	0	0	0	0	0	0	0	0	0	0	0
중로	21	8,201	133,816	7	4,118	82,611	2	718	10,803	12	3,365	40,402
소로	19	1,524	9,714	1	107	1,070	9	494	3,887	9	923	4,757

☐ 도로 총괄표(변경)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40	9,725	143,546	8	4,225	83,681	11	1,212	14,690	21	4,288	45,175
대로	0	0	0	0	0	0	0	0	0	0	0	0
중로	21	8,201	133,832	7	4,118	82,611	2	718	10,803	12	3,365	40,418
소로	19	1,524	9,714	1	107	1,070	9	494	3,887	9	923	4,757

☐ 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3	42	12	집산 도로	1700 (909)	현저동	아현동	일반 도로		건고제177호 (62.12.8)	
기정	중로	1	(6)	20	집산 도로	160	충정로2가 113-2	충정로2가 102-2	일반 도로		충고제722호 (36.3.26)	지구외 (충정로 진입부)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19	냉천동 74-230	냉천동 78-45	일반 도로		건고제560호 (63.9.19)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257	냉천동 78-45	냉천동 20-4	일반 도로		건고제560호 (63.9.19)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07	냉천동 74-51	냉천동 74-230	일반 도로		건고제560호 (63.9.19)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117	충정로2가 65-26	충정로2가 67-133	일반 도로		서고제155호 (03.6.16)	
기정	소로	3	(12)	4	국지 도로	105	충정로2가 73	충정로2가 65-5	일반 도로		건고제560호 (63.9.19)	

□ 도로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204	북아현동 산1-445	북아현동 1-17	일반 도로		서고제71호 (03.6.18)	일부지역 B : 10m, L : 204m 촉진지구편입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265	북아현동 221-16	북아현동 160-4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1	(2)	20	집산 도로	982	북아현동 138-24	북아현동 187-18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
기정	중로	1	(3)	20	집산 도로	954	북아현동 251-70	북아현동 산1-241	일반 도로		총고제903호 (39.11.18)	시점부폭원 (25M) /일부지역 B : 4m, L : 320m 촉진지구 편입
기정	중로	1	(4)	20	집산 도로	766	북아현동 130-19	충정로3가 7-35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1	(5)	20	집산 도로	974	충정로2가 69-6	북아현동 1-452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일부지역 B : 12m, L : 392m 촉진지구편입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514	북아현동 176-114	대현동 65-16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변경	중로	2	(1)	15	집산 도로	514	북아현동 176-114	대현동 65-16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선형일부조정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144	북아현동 240-2	대현동 65-16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261	북아현동 221-2	북아현동 240-2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287	북아현동 153-25	북아현동 220-11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147	북아현동 154-4	북아현동 148-19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변경	중로	3	(4)	12	집산 도로	147	북아현동 154-4	북아현동 148-19	일반 도로			시점부 형상변경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33	북아현동 135-4	북아현동 130-6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6)	12	집산 도로	323	북아현동 826	북아현동 126-22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220	충정로3가 33-4	북아현동 113-33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8)	12	집산 도로	311	북아현동 3-130	북아현동 1-49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중로	3	(9)	12	집산 도로	254	북아현동 176-87	북아현동 176-111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7	북아현동 238-22	북아현동 238-1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33	북아현동 220-32	북아현동 220-1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33	북아현동 156-28	북아현동 156-1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140	북아현동 1-94	북아현동 1-609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 도로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2	(5)	8	특수 도로	41	북아현동 251-39	북아현동 251-11	보행 전용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40	북아현동 130-1	북아현동 130-34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2	(8)	8	특수 도로	36	북아현동 134-21	북아현동 134-8	보행 전용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38	북아현동 1-228	북아현동 1-30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96	북아현동 1-50	북아현동 1-48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3	(1)	4	특수 도로	41	북아현동 251-45	북아현동 251-1	보행 전용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331	북아현동 216-43	북아현동 209-20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81	북아현동 1006	북아현동 119-3	일반 도로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3	(4)	4	특수 도로	86	충정로3가 1-35	충정로3가 1-40	보행 전용		서고제38호 (08.2.5)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23	북아현동 (중(집)3-(6))	북아현동 999	일반 도로	북아현동	서고제260호 (00.9.19)	
기정	소로	3	2	4	국지 도로	48	북아현동 (중(집)3-(6))	북아현동 980	일반 도로	북아현동	서고제260호 (00.9.19)	
기정	중로	1	(7)	20	국지 도로	17	북아현동 (중(집)1-(2))	북아현동 170-1	일반 도로	-	서고제382호 (11.12.15)	한성중·고교 진출입로
기정	소로	3	(5)	6	일반 도로	91	북아현동 (중(집)1-(1))	북아현동 215-95	일반 도로		서고제246호 (12.9.13)	북성 교육문화원 주차장진출입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4)	중로 3-(4)	형상 및 면적변경 - A : 증)16.2㎡	아현역 지하철 ①변출입구 이설 설치에 따른 면적변경

나) 주차장 : 변경없음

다) 철도

□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아현동정차장	도시철도	경기공전앞			230	3,910.0 (182.8)	건고232호 (77.12.1)	아현역 - 소공원⑦ 43㎡ 중복결정
변경	1	아현동정차장	도시철도	경기공전앞			230	3,985.6 (258.4)	-	아현역 -소공원⑦ 78.4㎡ 중복결정
기정	2	경의선	도시철도	서울	도라산		55,700 (1,100)	-		녹.지.(2,829㎡), 열공급설비(423㎡), 북주산공원(13,800㎡)과 중복결정

주) 면적내 ()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수치임

○ 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아현동정차장	• 형상 및 면적변경 - A : 증)75.6㎡ • 소공원⑦ 중복결정 면적변경 - A : 증)35.4㎡	• 아현역 지하철 ①번출입구 이설 설치에 따른 형상 및 면적변경

(2) 공간시설

가) 공 원

□ 총괄표

구 분	시가화구역			
	기정		변경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10	68,367.1	10	68,350.9
도시자연공원	1	2,087,511.9 (209)	1	2,087,511.9 (209)
근린공원	2	56,268.7	2	56,268.7
어린이공원	4	9,464.5	4	9,464.5
소공원	2	1,734.9	2	1,718.7
문화공원	1	5,871.0 (690.0)	1	5,871.0 (690.0)

주) ()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수치임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공원	• 변경 : (1,734.9㎡→1,718.7㎡) 감) A=16.2㎡	• 아현역 지하철 ①번출입구 이설 설치에 따른 면적변경

□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북아현3	어린이 공원	북아현2동 210-24외 6필지	2,269.0	-	2,269.0	총고제208호 (40.3.12)	
기정	4	안산 자연공원	도시 자연공원	북아현일대	2,087,511.9 (209.0)	-	2,087,511.9 (209.0)	총고제208호 (40.3.12)	
기정	5	금화공원	근린 공원	냉천동일대	17,231.0	-	17,231.0	서고제38호 (08.2.5)	
기정	6	너른바위 공원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216-37일대	2,596.2	-	2,596.2	서고제38호 (08.2.5)	
변경	7	굴레방 쉼터	소공원	북아현동 136-3일대	578.9	감)16.2	562.7	서고제38호 (08.2.5)	아현역철도(78.4㎡) 와 중복결정
기정	8	정자 쉼터	소공원	북아현동 130-3일대	1,156.0	-	1,156.0	서고제38호 (08.2.5)	
기정	9	북주산 공원	근린 공원	북아현동 113-61일대	39,039.0	-	39,039.0	서고제38호 (08.2.5)	경의선철도 (13,800.0㎡)와 중복결정(구역내 36,022.9㎡, 구역외 4,561.3㎡), 열공급설비와 중복결정(구역내 3,655.9㎡, 구역외 423㎡)
기정	10	봉수 공원	문화 공원	북아현동 1-98일대	5,871.0 (690.0)	-	5,871.0 (690.0)	서고제38호 (08.2.5)	지구외 5,181.0㎡, 지구내 690.0㎡
기정	11	북아현4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216-59일대	2,357.2	-	2,357.2	서고제382호 (11.12.15)	
기정	12	북아현5	어린이 공원	북아현동 147-48일대	2,240.8	-	2,240.8	서고제382호 (11.12.15)	

주) ()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수치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굴레방쉼터	• 변경 - A : 감) 16.2㎡ • 중복결정면적 증가 - A : 증) 35.4㎡	• 아현역 지하철①번출구 이설에 따른 공원형태 및 면적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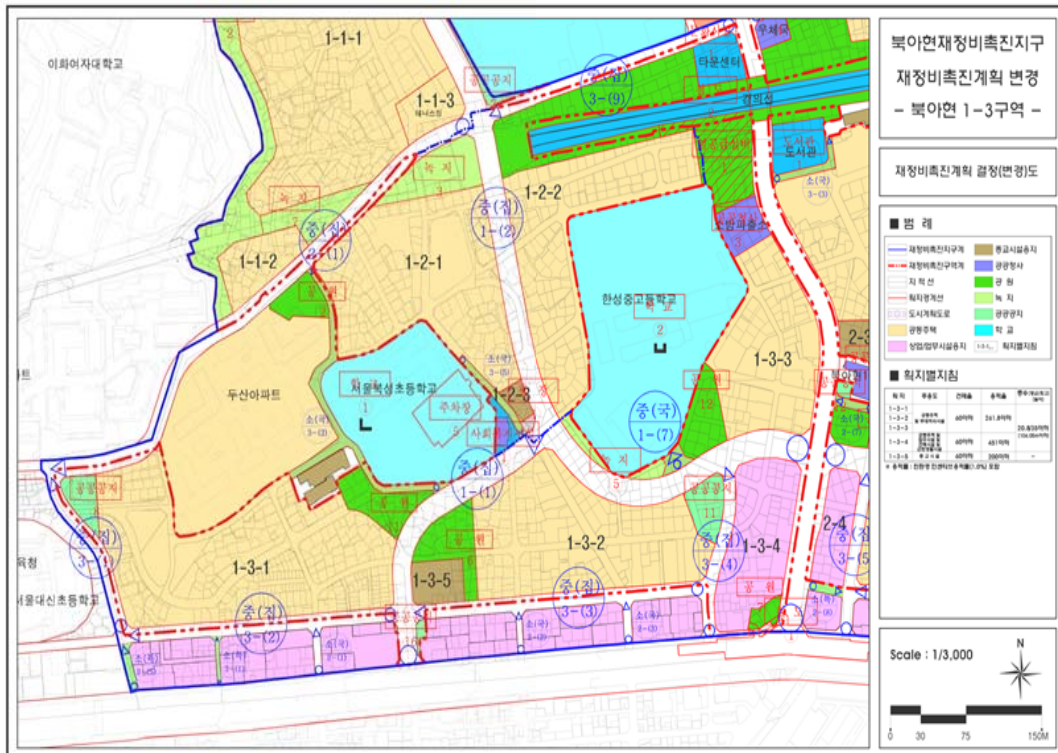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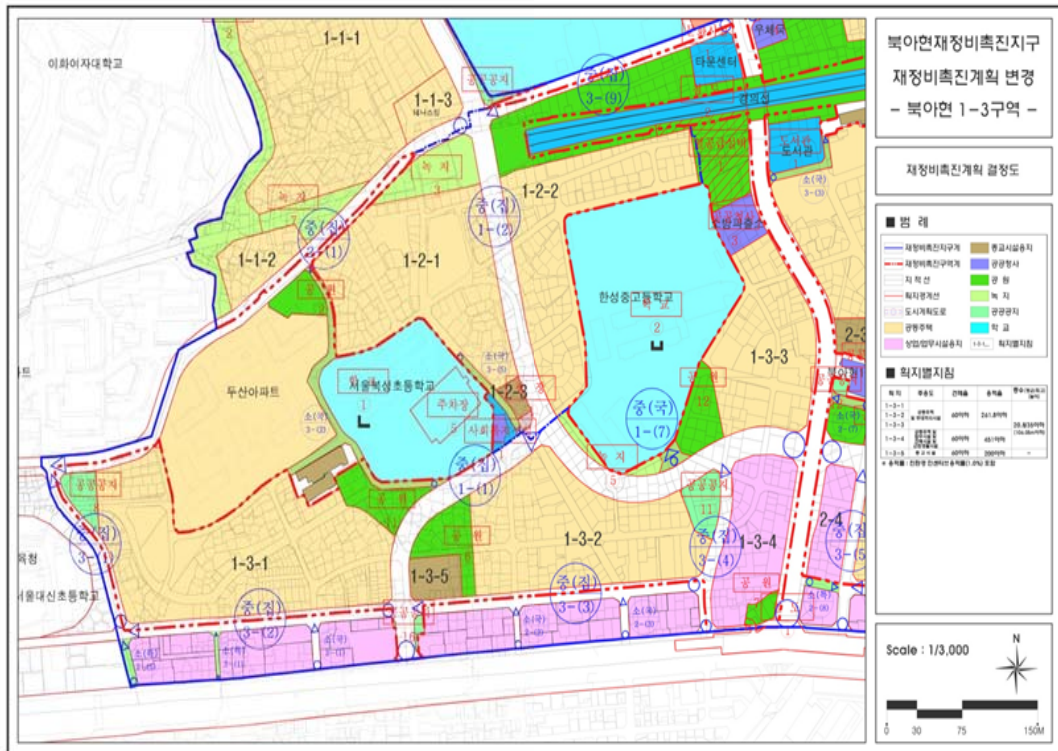
□ 녹지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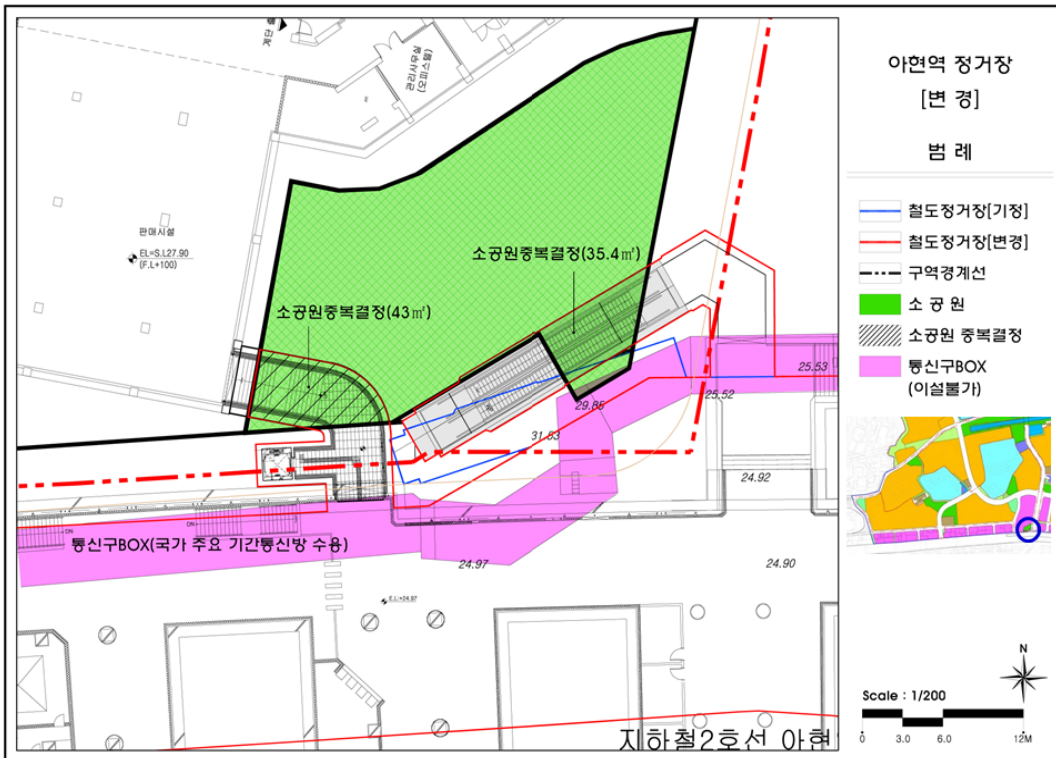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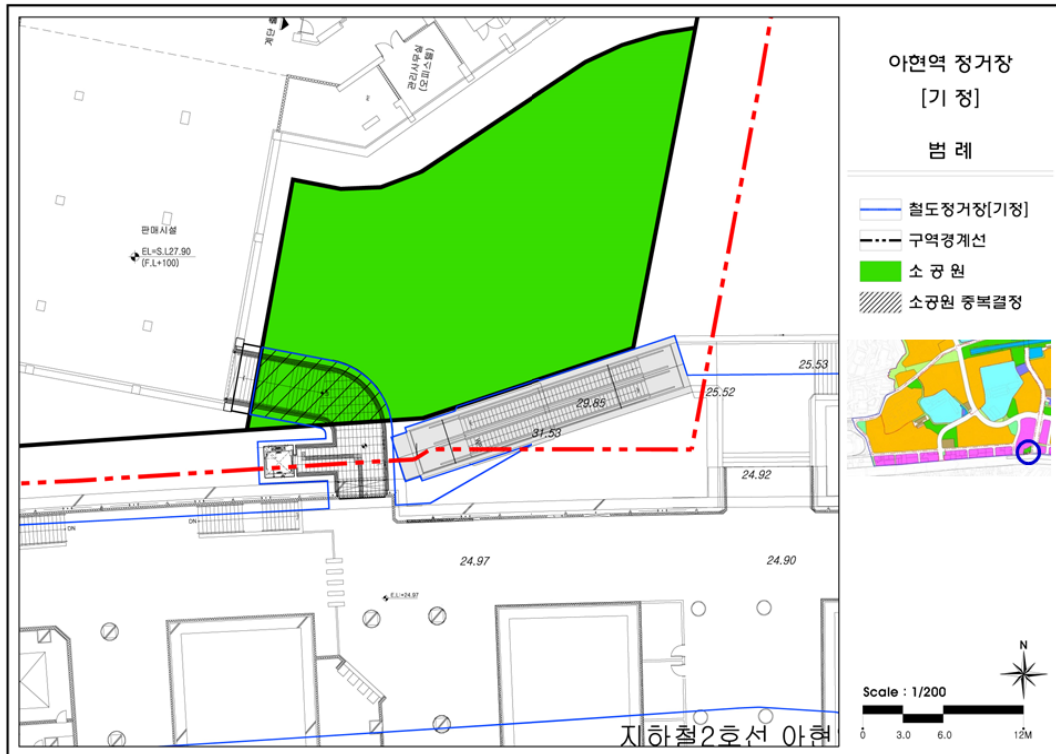
□ 광장 : 변경없음

-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 (4)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6. 관계 도면은 붙임 참조(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 2133 - 7226) 및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02) 330-1640)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1호**

용왕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17호(2005.1.20.)로 공원조성계획 최종결정(변경)된 용왕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용왕산근린공원 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원 내 불법배드민턴장을 정비하여 훼손지역을 녹지로 복원하고 실내배드민턴장을 신축하여 시민들의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199-51 일대

3. 면 적 : 213,552㎡

4.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5) 및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2620-3574)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용양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위치 : 양천구 목동 199-51번지 일대)

구	단	경				변				경				변				비	고
		변		전		변		전		변		전		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 (수)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 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 물 (기)						
기 반 시 설	합	213,552	26,459	5동	885.88	920.88	18	213,552	24,714	6동	833.48	868.48	18						
	소 계	9,538	9,538					9,538	9,538										
	도 로	9,538	9,538					9,538	9,538								증감없음		
	광 장	-	-					-	-								-		
조 경 시 설		26	26				15	26	26				15				증감없음		
휴 양 시 설		3,450	3,450					3,450	3,450								증감없음		
유 희 시 설		349	349					349	349								증감없음		
운 동 시 설		12,329	12,329	1동	643.40	643.40		10,816	10,816	1동	558	558					감 1,513		
교 양 시 설		325	325	1동	119.64	119.64		325	325	1동	119.64	119.64					증감없음		
편 익 시 설		380	380	2동	101.00	136.00	3	413	413	3동	134.00	169.00	3				증 33		
관 리 시 설		62	62	1동	21.84	21.84		62	62	1동	21.84	21.84					증감없음		
녹지 및 기타		187,093	-					188,573	-								증 1,480		
시 설 율 (법정 40%)		(26,459 / 213,552) x 100 = 12.39 %						(24,714 / 213,552) x 100 = 11.57 %											
건 폐 율 (법정 10%)		(885.88 / 213,552) x 100 = 0.41 %						(833.48 / 213,552) x 100 = 0.39 %											

2.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기 반 시 설	합 계			213,552	26,459		5동	885.88	920.88	18						6동	830.48	865.48	18							
	계			9,538	9,538																					
	도 로		전 지 역	9,538	9,538							전 지 역	9,538	9,538												
	계			26	26					15			26	26						15						
조 경 시 설	관상용 식수대	가	2개소	26	26						가	2개소	26	26												
	가-1	목동 산11, 산12-3	(13)	(13)							가-1	목동 199-51	(13)	(13)									증감없음 (지반통합)			
	가-2	목동 산9-1, 산10-9	(13)	(13)							가-2	목동 199-51	(13)	(13)									증감없음 (지반통합)			
	①	전 지 역								14	①	전 지 역							14				증감없음 (지반통합)			
	②	전 지 역								1	②	전 지 역							1				증감없음 (지반통합)			
	파고라																									
	정자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환경시설	계																			
	휴게소	나	12 개소	3,450	3,450					나	12 개소	3,450	3,450							
		나-1	목동산23-5, 산24-3	(1,374)	(1,374)					나-1	목동199-51	(1,374)	(1,374)							증감없음 (지반통합)
		나-2	목동 산29-4	(203)	(203)					나-2	목동199-51	(203)	(203)							증감없음 (지반통합)
		나-3	목동 산29-5	(157)	(157)					나-3	목동199-51	(157)	(157)							증감없음 (지반통합)
		나-4	목동 산26, 산29-17	(334)	(334)					나-4	목동199-51	(334)	(334)							증감없음 (지반통합)
		나-5	목동 산22-3, 산22-4	(47)	(47)					나-5	목동199-51	(47)	(47)							증감없음 (지반통합)
		나-6	목동 산12-3	(130)	(130)					나-6	목동 202-16	(130)	(130)							증감없음 (지반통합)
		나-7	목동 산9-1	(257)	(257)					나-7	목동199-51	(257)	(257)							증감없음 (지반통합)
		나-8	목동 산7-3	(106)	(106)					나-8	목동199-51	(106)	(106)							증감없음 (지반통합)
		나-9	목동 산7-3	(175)	(175)					나-9	목동199-51	(175)	(175)							증감없음 (지반통합)
		나-10	목동 산9-1, 산12-3	(248)	(248)					나-10	목동199-51, 202-16	(248)	(248)							증감없음 (지반통합)
		나-11	목동 산9-1	(193)	(193)					나-11	목동199-51	(193)	(193)							증감없음 (지반통합)
	나-12	목동 산9-1	(226)	(226)					나-12	목동199-51	(226)	(226)							증감없음 (지반통합)	
안전시설	계			349	349								349	349						
	어린이 놀이터	다	3 개소	349	349					다	3 개소	349	349							
		다-1	목동 산29-5	(66)	(66)					다-1	목동199-51	(66)	(66)							증감없음 (지반통합)
		다-2	목동 산10-9, 산11	(186)	(186)					다-2	목동199-51	(186)	(186)							증감없음 (지반통합)
		다-3	목동 산7-3	(97)	(97)					다-3	목동199-51	(97)	(97)							증감없음 (지반통합)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안 북 시 설	계			12,329	12,329	철근, 철골	1동	643.4	643.4			10,816	10,816	철근, 철골	1동	558	558	감 1,513
	실내 체육관	라	목동 산12-3	1,748	1,748	철근, 철골	1동	643.4	643.4									폐지 감 1,748
	실내배드민턴장																	신설 증 730
	배드민턴장	마	2 개소	777	777													감 287
		마-1	목동 산 23-5	(490)	(490)													증감없음 (지번통합)
		마-2	목동 산 23-5	(287)	(287)													체력단련장 으로 변경 감 287
	다목적 운동장	바	1개소	5,617	5,617													
		(바)	목동 산9-1, 산12-3	(5,617)	(5,617)													증감없음 (지번통합)
	조깅트랙	사	목동 산9-1, 산12-3	1,275	1,275													증감없음 (지번통합)
	게이트볼장	아	목동 산10-9	459	459													증감없음 (지번통합)
	X-GAME장	자	목동 산9-1	380	380													폐지 감 380
	건강지압로	차	목동 산9-1	190	190													증감없음 (지번통합)
	인공암벽	카	목동 산9-1	115	115													폐지 감 115
	농구장	타	목동 산22-4, 산23-7	476	476													증감없음 (지번통합)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안동시	체력단련장	파	6개소	1,292	1,292						파	6개소	1,579	1,579						증 287
		파-1	목동 산23-5	(478)	(478)						파-1	목동199-51	(478)	(478)						증감없음 (지번통합)
		파-2	목동 산23-5, 산23-7	(180)	(180)						파-2	목동199-51	(180)	(180)						증감없음 (지번통합)
		파-3	목동 산12-3	(165)	(165)						파-3	목동 202-16	(165)	(165)						증감없음 (지번통합)
		파-4	목동 산9-1	(373)	(373)						파-4	목동199-51	(373)	(373)						증감없음 (지번통합)
		파-5	목동 산7-3	(48)	(48)						파-5	목동199-51	(48)	(48)						증감없음 (지번통합)
		파-6	목동 산12-3	(48)	(48)						파-6	목동199-51	(48)	(48)						증감없음 (지번통합)
관양시	아외무대									파-7	목동199-51	(287)	(287)						베드민턴장에서 변경 증 287	
		계			325	325	철근, 철골	1동	119.64	119.64			325	325	철근, 철골	1동	119.64	119.64		
		하	목동 산9-1, 산10-9, 산11, 산12-3	325	325	철근, 철골	1동	119.64	119.64		하	목동199-51, 202-16	325	325	철근, 철골	1동	119.64	119.64	증감없음 (지번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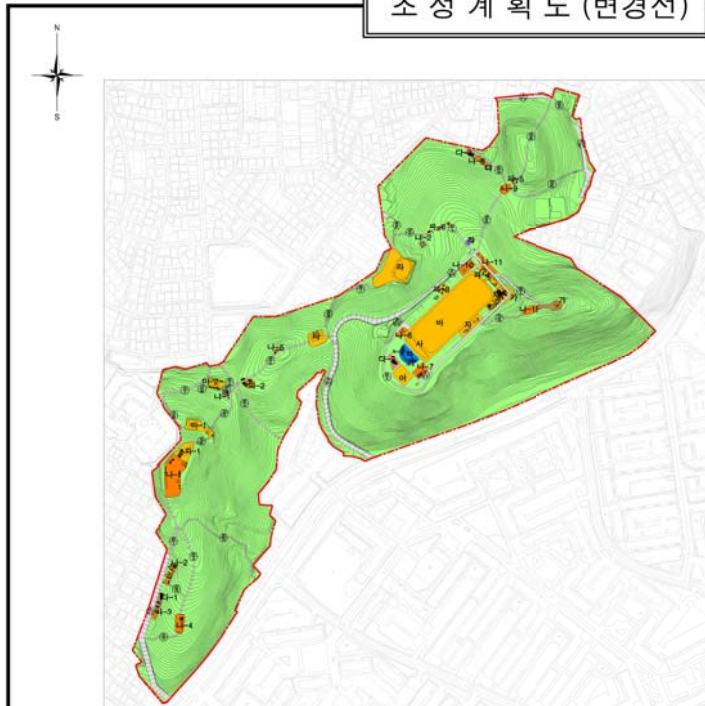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편 의 시 설	계			380	380	조적조	2동	101	136	3			413	413	조적조	3동	134	169	3	증 33
	전망대	가	목동 산9-1	250	250			35	70	1	가	목동199-51	250	250			35	70	1	증감없음 (지번통합)
	화장실	나	2 개 소	66	66	조적조	2동	66	66		나	3 개 소	99	99	조적조	3동	99	99		증 33
		나-1	목동 산23-5	(33)	(33)	조적조	1동	(33)	(33)		나-1	목동199-51	(33)	(33)	조적조	1동	(33)	(33)		증감없음 (지번통합)
		나-2	목동 산12-3, 산13-3	(33)	(33)	조적조	1동	(33)	(33)		나-2	목동199-51	(33)	(33)	조적조	1동	(33)	(33)		증감없음 (지번통합)
											나-3	목동199-51	(33)	(33)	조적조	1동	(33)	(33)		신설 증 33
	음수대	③	목동 산9-1, 산23-5							2	③	목동199-51							2	
	약수터	다	목동 산7-3	64	64						다	목동199-51	64	64						
	계			62	62	목조	1동	21.84	21.84				62	62	목조	1동	21.84	21.84		
	관리창고	fi	목동 산7-4	62	62	목조	1동	21.84	21.84		라	목동199-51	62	62	목조	1동	21.84	21.84		증감없음 (지번통합)
관 리 시 설	계			187,093									188,573							증 1,480
	기타			1,966								1,966								증감없음
	복지			185,127									186,607							증 1,480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249	9,538				
당초	소로	2	1	8	222	1,776	진입로	목동 산29-16	목동 산29-4	
당초	소로	3	1	6	332	1,992	진입로	목동 산10-3	목동 산12-3	
당초	소로	3	2	4.5	82	369	연결로	목동 산7-11	목동 산7-3	
당초	소로	3	3	4.5	114	513	연결로	목동 산7-20	목동 산7-12	
당초	소로	3	4	3	378	1,134	연결로	목동 산12-3	목동 산9-1	
당초	소로	3	5	3	11	33	연결로	목동 산12-3	목동 산12-3	
당초	산책로		1	3	39	117	산책로	목동 산29-4	목동 산23-5	
당초	산책로		2	3	78	234	산책로	목동 산9-1	목동 산9-1	
당초	산책로		3	2	178	356	산책로	목동 산26	목동 산23-5	
당초	산책로		4	2	99	198	산책로	목동 산23-5	목동 산23-5	
당초	산책로		5	2	141	282	산책로	목동 산23-5	목동 199-51	
당초	산책로		6	2	123	246	산책로	목동 산23-5	목동 산22-4	
당초	산책로		7	2	56	112	산책로	목동 산12-3	목동 산12-3	
당초	산책로		8	2	150	300	산책로	목동 산12-3	목동 산9-1	
당초	산책로		9	2	91	182	산책로	목동 산7-4	목동 산 13-3	
당초	산책로		10	2	94	188	산책로	목동 산9-1	목동 산7-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11	1.5	52	78	산책로	목동 산29-17	목동 산29-17	
당초	산책로		12	1.5	30	45	산책로	목동 산29-5	목동 산29-5	
당초	산책로		13	1.5	164	246	산책로	목동 산23-5	목동 산23-5	
당초	산책로		14	1.5	74	111	산책로	목동 산23-5	목동 산23-5	
당초	산책로		15	1.5	12	18	산책로	목동 산23-5	목동 산23-5	
당초	산책로		16	1.5	66	99	산책로	목동 산11	목동 산22-4	
당초	산책로		17	1.5	44	66	산책로	목동 산13-3	목동 산12-3	
당초	산책로		18	1.5	62	93	산책로	목동 산9-1	목동 산9-1	
당초	산책로		19	1.5	76	114	산책로	목동 산7-3	목동 산7-3	
당초	산책로		20	1.5	140	210	산책로	목동 산7-3	목동 산7-11	
당초	산책로		21	1.5	50	75	산책로	목동 520-10	목동 520-10	
당초	산책로		22	1.5	120	180	산책로	목동 산7-3	목동 산7-3	
당초	산책로		23	1	51	51	산책로	목동 산23-5	목동 산23-5	
당초	산책로		24	1	24	24	산책로	목동 산23-5	목동 산23-5	
당초	산책로		25	1	10	10	산책로	목동 24-7	목동 산23-5	
당초	산책로		26	1	15	15	산책로	목동 산23-5	목동 산23-5	
당초	산책로		27	1	71	71	산책로	목동 산13-3	목동 산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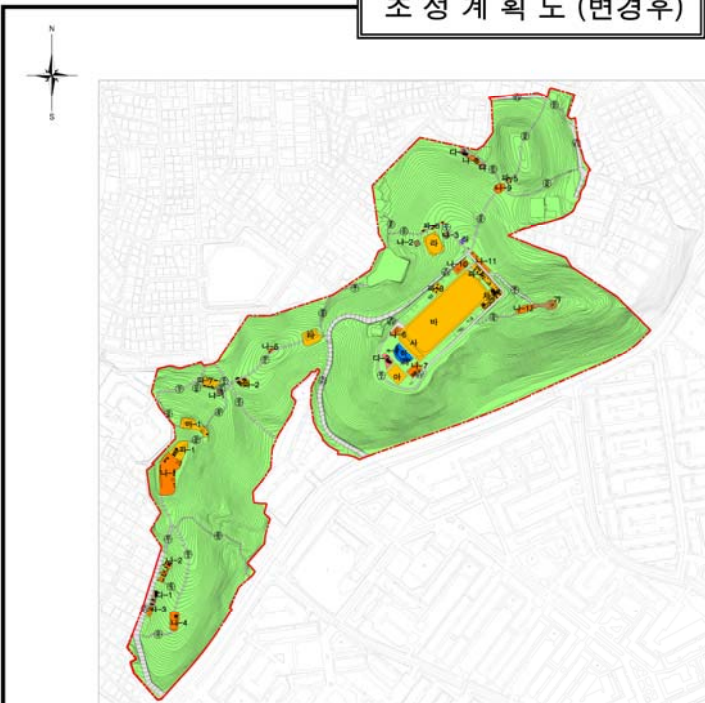
조성 계획도 (변경전)



용왕산근린공원

[illegible]

조성계획도(변경후)



용왕산근린공원

[illegibl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2호

토지세목(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74호(2015.09.17), 제2016-340호(2016.10.27)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토지세목 고시 및 제2017-15호(2017.01.19.)로 토지세목(변경) 고시된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1. 사업의 명칭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변경없음)

2.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위 치 : 서울 양천구 신월동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 올림픽대로)

나. 규 모 : 연장 7.53km, 왕복 4차로, 소형차전용

다. 총사업비 : 4,546억원(2007.3.1. 불변가격 기준)

라. 총투자비 : 7,130억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착수일 : 2015년 10월 16일)

마.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1) 성 명 : 서울터널주식회사 대표이사 강태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 와이피센터 9층

(2) 성 명 : 서울특별시(토지 등 보상업무 및 토지소유·사용권 취득)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나. 출자자 및 지분율(10개사)

KIAMCO도로투자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 제6호	22.84%	지에스건설(주)	6.00%
KIAMCO도로투자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 제7호	27.16%	현대엔지니어링(주)	5.55%
대림산업(주)	18.00%	롯데건설(주)	4.85%
금호산업(주)	6.20%	동광건설(주)	3.30%
현대건설(주)	6.1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참조(변경)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변경없음)

6.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도로계획과(02-2133-8066) 및 (주)서울터널주식회사(070-4660-7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하, 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지하 심도(m)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 기준(m)			이해관계인			비고
		구동	지 번		구분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최심도	~	최고점	주소	성명	관리의 종류	
98	당초	양천구 목동	918-1	대	여의도 방향	7,692.9	503.3	성남 분당구 정자동 206	주식회사 케이티	62.82	-74.74	~	-54.43				
	변경	양천구 목동	918-1	대	여의도 방향	7,692.9	509	성남 분당구 정자동 206	주식회사 케이티	62.82	-74.74	~	-54.4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3호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 고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7조에 의한 급수공사 정액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실시일시 : 2017년 4월 1일 급수공사 승인 분부터 시행
2. 실시지역 : 서울시 급수가능 지역 전역
3. 대 상 : 급수공사 신청 건물로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7조에 의한 정액공사비 대상 건물(신규급수, 구경 확대)
4. 정액공사비 조정내용
 - 단독주택 및 일반건물

현 행	조 정 (안)
• 건축연면적 85㎡미만(건당) ⇒ 430,000원 • 건축연면적 85㎡~150㎡미만(건당) ⇒ 430,000 + 85㎡초과면적×(㎡당 2,000원) • 건축연면적 150㎡~500㎡미만(건당) ⇒ 560,000 + 150㎡초과면적×(㎡당 3,000원) • 건축연면적 500㎡이상(건당) ⇒ 1,610,000 + 500㎡초과면적×(㎡당 1,100원)	• 건축연면적 85㎡미만(건당) ⇒ 600,000원 • 건축연면적 : 85㎡~150㎡미만 ⇒ 600,000 + 85㎡초과면적×(㎡당 8,000원) • 건축연면적 : 150㎡~500㎡미만(건당) ⇒ 1,120,000 + 150㎡초과면적×(㎡당 3,000원) • 건축연면적 : 500㎡~2,000㎡미만(건당) ⇒ 2,170,000 + 500㎡초과면적×(㎡당 1,000원) • 건축연면적 : 2,000㎡~7,000㎡미만(건당) ⇒ 3,670,000 + 2,000㎡초과면적×(㎡당 800원) • 건축연면적 : 7,000㎡이상 ⇒ 7,670,000 + 7,000㎡초과면적×(㎡당 350원)

○ 공동주택

현 행	조 정 (안)
• 2~19세대 ⇒ 세대당 220,000원 • 20~500세대 ⇒ 세대당 {220,000원-(260×세대수)원} • 501세대 이상 ⇒ 세대당 90,000원	• 2세대~5세대 ⇒ 500,000 + 세대당 300,000 • 6세대~10세대 ⇒ 750,000 + 세대당 250,000 • 11세대~20세대 ⇒ 2,050,000 + 세대당 120,000 • 21세대~49세대 ⇒ 850,000 + 세대당 180,000 • 50세대~164세대 ⇒ 6,975,000 + 세대당 55,000 • 165세대이상 ⇒ 11,403,000 + 세대당 28,000

5. 공사비 산출방법

- 정액공사비는 수요가 인입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도로복구비·계량기대금·감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함
- ※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비(계량기값+설치비)를 제외하고 산정함

6. 정액공사비 납부방법

- 공사비는 신청 후 납입고지서에 의거 공사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4호****세곡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8호(2015.2.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91호(2011.7.14)로 공원조성계획결정된 세곡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세곡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으로 추가 편입된 면적을 녹지로 조성하여 공원경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574-8 일대

3. 면 적 : 103,449m²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6) 및 강남구 공원녹지과(☎ 3423-624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곡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574-8번지 일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01,513.00	4,764.91		124.70	124.70	51	103,449.00	5,249.34	1	126.86	126.86	51	증) 1,936㎡				
기반 시설	소 계	3,763.66						3,763.66	3,763.66									
	도 로	3,714.77						3,714.77	3,714.77									
	광 장	48.89						48.89	48.89									
조 경 시 설								484.43	484.43					오류정정				
유 희 시 설		95.62					5							오류정정				
휴 양 시 설		629.63					46	629.63	629.63				46					
운 동 시 설								95.62	95.62				5	오류정정				
관 리 시 설		276.00			124.70	124.70		276.00	276.00	1	126.86	126.86		오류정정				
녹지 및 기타		96,748.09						98,199.66						증) 1,451.57㎡ 오류정정(감484.43㎡)				
시 설 율 (법정 40%)		(4,764.91 / 101,513.00) × 100 = 4.69%					(5,249.34 / 103,449.00) × 100 = 5.07%					증) 0.38%						
건 폐 율 (법정 10%)		(124.70 / 101,513.00) × 100 = 0.12%					(126.86 / 103,449.00) × 100 = 0.12%					감) 0.0002%						

2. 시설조서

구 분	기						경						변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구도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합 계																			
기반 시설	소 계																		
	도로	소로						소로											
	산책로							산책로											
	진입광장	가	자곡동512-3					가	자곡동512-3										
조경 시설	소 계																	오류정정	
	조화원	나	자곡동 512-11,12,13	(484.43)				나	자곡동 512-11,12,13									오류정정	
휴양 시설	소 계																		
		다-1	자곡동 산 48-12	9.75				다-1	자곡동 산 48-12	9.75	9.75								
		다-2	자곡동512-13	72.37				다-2	자곡동512-13	72.37	72.37								
		다-3	자곡동512-5	39.45				다-3	자곡동512-5	39.45	39.45								
		다-4	자곡동574-9	52.48				다-4	자곡동574-9	52.48	52.48								
		다-5	자곡동574-2	17.39				다-5	자곡동574-2	17.39	17.39								
		다-6	자곡동 산 50-12	41.84				다-6	자곡동 산 50-12	41.84	41.84								
		다-7	자곡동 산 50-11	16.05				다-7	자곡동 산 50-11	16.05	16.05								
		다-8	자곡동 산 50-11	46.74				다-8	자곡동 산 50-11	46.74	46.74								
		다-9	자곡동 산 50-9	132.73				다-9	자곡동 산 50-9	132.73	132.73								
		다-10	자곡동496-1	31.50				다-10	자곡동496-1	31.50	31.50								
	다-11	자곡동512-27	93.30				다-11	자곡동512-27	93.30	9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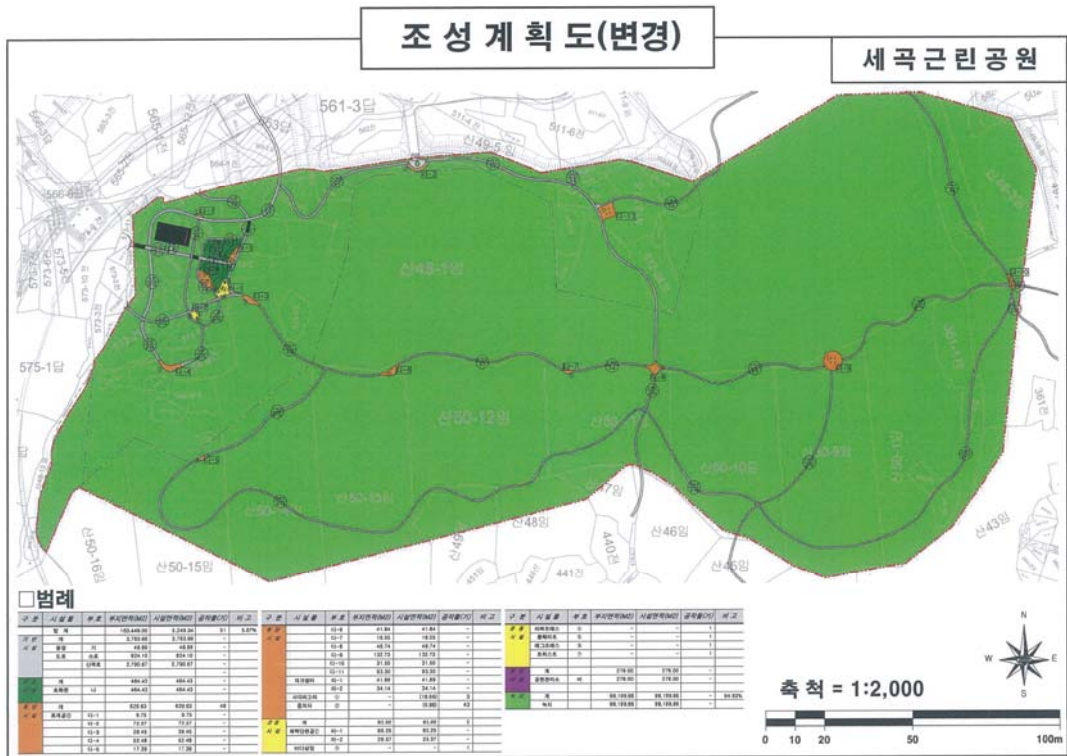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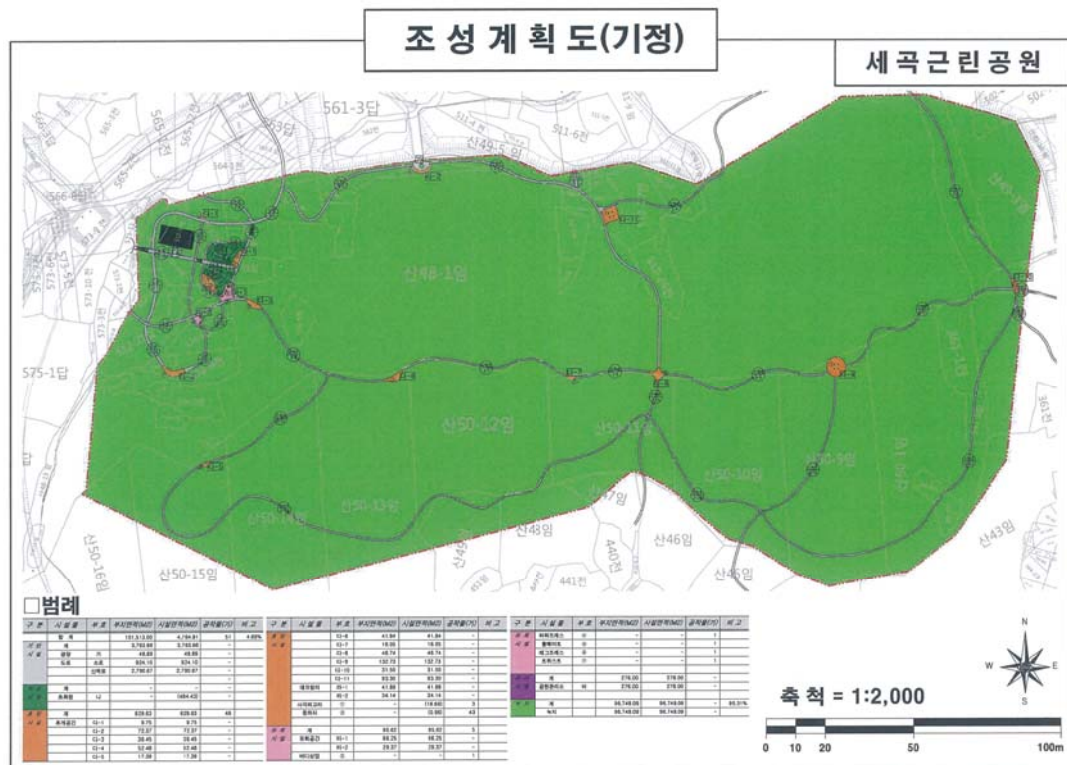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데크썰터	라-1	자곡동512-12	41.89							라-1	자곡동512-12	41.89	41.89							
		라-2	자곡동512-3	34.14							라-2	자곡동512-3	34.14	34.14							
	사각파고라	①	자곡동512-13 자곡동 산50-9 자곡동512-27	(18.66)					3	①	자곡동512-13 자곡동 산50-9 자곡동512-27	(18.66)	(18.66)					3			
	등의자	②	공원 전지역	(0.96)					43	②	공원 전지역	(0.96)	(0.96)					43			
유흥 시설	소 계			95.62					5										오류정정		
	유흥공간	마-1	자곡동512-19	66.25																	
		마-2	자곡동512-19	29.37																	
	바디신업	③	자곡동512-19						1												
	파워프레스	④	자곡동512-19						1												
	플레이트	⑤	자곡동512-19						1												
	레그프레스	⑥	자곡동512-19						1												
운동 시설	트위스트	⑦	자곡동512-19						1												
	소 계												95.62	95.62				5	오류정정		
	체력단련 공간									마-1	자곡동512-19	66.25	66.25								
										마-2	자곡동512-19	29.37	29.37								
	바디신업									③	자곡동512-19							1			
	파워프레스									④	자곡동512-19							1			
	플레이트									⑤	자곡동512-19							1			
	레그프레스									⑥	자곡동512-19							1			
	트위스트									⑦	자곡동512-19							1			
																			1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관리 시설	소 계		276.00									276.00	276.00	철근 콘크리트	1층	126.86	126.86		오류정정
	공원 관리소	바	지곡동512-10	276.00	250.70		124.70	124.70	156.11		바	지곡동512-10	276.00	276.00	철근 콘크리트	1층	126.86	126.86	
녹지 및 기타	소 계		96,748.09									98,199.66							중) 1,451.57㎡
	녹 지			96,748.09								98,199.66							중) 1,451.57㎡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2,823.85	3,714.77				
기정	소로	소 계			594.30	924.10				
기정		3	1	1.8	121.80	219.24	진입로	대상지외곽	소로 3-11	
기정		3	2	1.5	35.30	52.95	진입로	대상지외곽	소로 3-1	
기정		3	3	1.5	46.40	69.60	보행로	소로 3-1	소로 3-13	
기정		3	4	1.2	33.30	39.96	보행로	소로 3-3	소로 3-6	
기정		3	5	1.0	10.60	10.60	보행로	소로 3-4	소로 3-6	
기정		3	6	2.0	22.70	45.40	보행로	소로 3-9	소로 3-3	
기정		3	7	1.0	8.50	8.50	보행로	소로 3-6	휴게공간 다-2	
기정		3	8	1.2	27.90	33.48	보행로	소로 3-6	소로 3-13	
기정		3	9	1.2	56.40	67.68	보행로	소로 3-1	소로 3-13	
기정		3	10	3.0	4.00	12.00	보행로	소로 3-11	공원관리소 바	
기정		3	11	2.0	34.10	68.20	진입로	대상지 외곽	소로 3-9	
기정		3	12	1.8	42.10	75.78	보행로	소로 3-11	소로 3-13	
기정		3	13	1.5	79.90	119.85	진입로	대상지 외곽	휴게공간 다-3	
기정		3	14	1.8	25.50	45.90	보행로	소로 3-13	휴게공간 다-4	
기정		3	15	1.2	27.40	32.88	보행로	휴게공간 다-4	소로 3-13	
기정		3	16	1.2	18.40	22.08	보행로	소로 3-15	소로 3-13	
기정	산책로	소 계			2,229.55	2,790.67				
기정		3	1	1.5	112.30	168.45	산책로	소로 3-1	광장 가	
기정		3	2	1.5	241.70	362.55	산책로	광장 가	휴게공간 다-8	
기정		3	3	2.0	10.80	21.60	진입로	대상지 외곽	산책로 3-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산책로	3	4	1.2	95.70	114.84	진입로	대상지 외곽	산책로 3-2	
기정		3	5	1.2	139.50	167.40	진입로	대상지 외곽	휴게공간 다-10	
기정		3	6	1.2	100.60	120.72	산책로	휴게공간 다-6	휴게공간 다-3	
기정		3	7	1.2	116.90	140.28	산책로	휴게공간 다-7	휴게공간 다-6	
기정		3	8	1.2	18.90	22.68	산책로	휴게공간 다-8	휴게공간 다-7	
기정		3	9	1.2	114.70	137.64	산책로	휴게공간 다-9	휴게공간 다-8	
기정		3	10	1.2	138.40	166.08	산책로	휴게공간 다-10	휴게공간 다-9	
기정		3	11	1.3	3.70	4.81	진입로	대상지 외곽	휴게공간 다-10	
기정		3	12	1.2	98.20	117.84	산책로	휴게공간 다-5	산책로 3-6	
기정		3	13	1.2	431.10	517.32	산책로	산책로 3-14	휴게공간 다-5	
기정		3	14	1.2	61.90	74.28	진입로	대상지 외곽	휴게공간 다-8	
기정		3	15	1.2	105.60	126.72	산책로	산책로 3-16	산책로 3-14	
기정		3	16	1.2	134.60	161.52	진입로	대상지 외곽	휴게공간 다-9	
기정		3	17	1.2	287.90	345.48	산책로	산책로 3-18	산책로 3-16	
기정		3	18	1.2	17.05	20.46	진입로	대상지 외곽	휴게공간 다-1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대학교)

건설부고시 제124호(1970.03.1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06호(2016.12.15.)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일대 서울대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일대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건축물 신·증축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학 교	대 학 (서울대학교)	관악구 신림동 산56-1 일대	3,895,659	-	3,895,659	건고 제124호 (1970.3.17)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구역계획 [변경 없음]

구역	구분	면적(㎡)	구역	구분	면적(㎡)
일반관리구역	①	129,725	외부활동구역	②	53,884
	③	236,586		④	145,853
	⑤	257,508		⑫	61,523
	⑧	77,618	상징경관구역	⑦	71,871
	⑨	80,790	소 계		333,131
	⑩	152,510	녹지보존구역	⑥	47,410
	⑪	147,616		⑭	2,313,069
	⑬	119,696	소 계		2,360,479
소계		1,202,049	합 계		3,895,659

(2) 밀도계획 (건폐율)

구분	밀도산정기준면적(㎡)	법정건폐율(%)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76,122	60.00	19.83	19.93	21.79	
자연녹지지역	1,623,783	20.00				
계	1,699,905	21.79				

※ 학교용지 면적(3,895,659㎡) 대비 법정건폐율 20.47%, 사용건폐율 8.70%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높이)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법정용 적률	사용용적률		계획용 적률	이전용적 률	관리용 적률		
		기정	변경					
①	125.00	86.44	86.44	97.00	-	125.00	•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②	103.00	7.65	7.65	17.00	- 83.00	20.00	• 지표로부터 16m 이하	외부활동구역 (정문, 대운동장 등)
③	100.00	89.04	90.12	88.00	-	100.00	•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산복도로 연결지 별도 적용(기준3)	-
④	100.00	-	-	-	- 100.00	-	-	외부활동구역 (국수봉)
⑤	101.00	116.25	116.25	143.00	+ 49.00	150.00	• 지표로부터 40m 이하 • 산복도로 연결지 별도 적용	-
⑥	100.00	-	-	-	-	-	-	녹지보존구역
⑦	100.00	91.99	91.99	100.00	-	100.00	• 지표로부터 40m 이하	상징경관구역 (본관, 중앙도서관, 아크로폴리스, 규장각)
⑧	100.00	107.82	107.82	135.00	+ 50.00	150.00	• 지표로부터 40m 이하 • 산복도로 연결지 별도 적용(기준3)	-
⑨	100.00	123.09	123.09	125.00	+ 50.00	150.00	•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⑩	100.00	116.62	118.25	144.00	+ 50.00	150.00	•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⑪	100.00	73.60	75.00	79.00	-	100.00	• 지표로부터 40m 이하 • 녹지연접지 16~30m 이하	-
⑫	100.00	1.29	1.29	2.00	- 98.00	2.00	• 오픈스페이스 구역에 부합되는 높이 관리 : 표고 +16m이하	외부활동구역 (버들길)
⑬	100.00	94.13	94.13	94.00	-	100.00	• 지표로부터 16~40m 이하	-
⑭	100.00	0.063	0.063	-	캠퍼스지역 비오톱 2등급지 일부 이전	0.063	• 기존 건축물 개축 허용	녹지보존구역

(4) 변경 건축물 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		비고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 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 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 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 구 역	경영전문대학원 (LG경영관)	-	-	3,256.69	3,633.58	-	-	11,390.96	15,418.56	-	-	8,945.31	11,516.75	지하1층 지상7층	지하1층 지상7층	증축
10 구 역	역사기록관	-	-	-	1,326.78	-	-	-	5,375.95	-	-	-	2,474.83	-	지하3층 지상2층	신축
11 구 역	약학관	-	-	1,607.76	1,665.70	-	-	6,576.24	8,645.20	-	-	6,576.24	8,645.20	지상4층	지하1층 지상6층	철거후 신축
소계		-	-	4,864.45	6,626.06	-	-	17,967.20	29,439.71	-	-	15,521.55	22,636.78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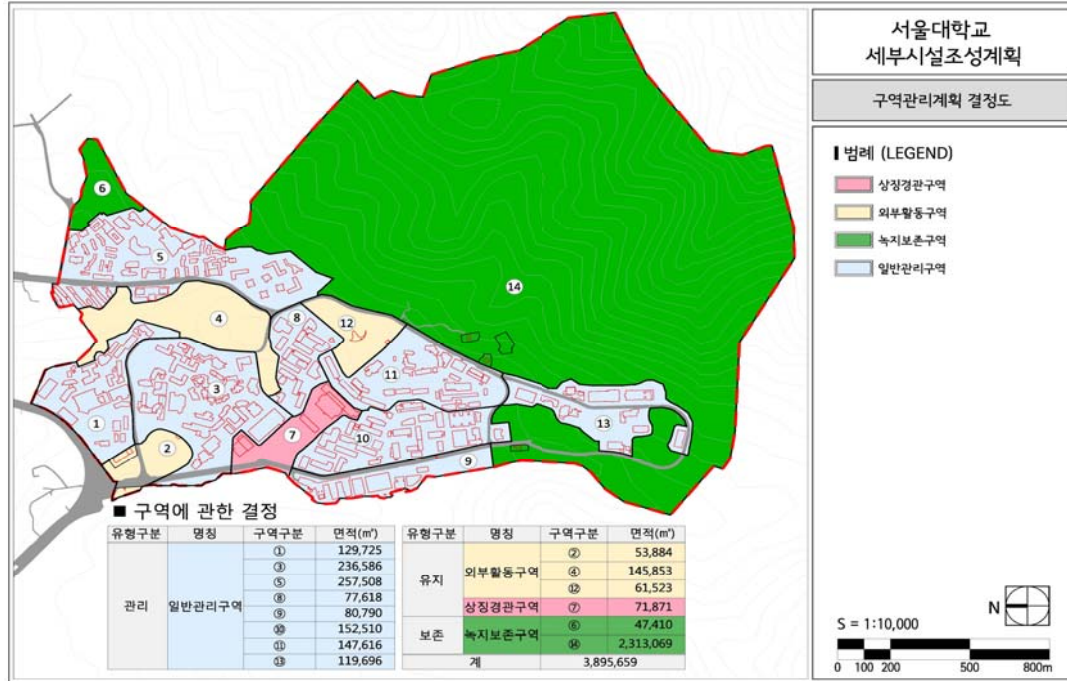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도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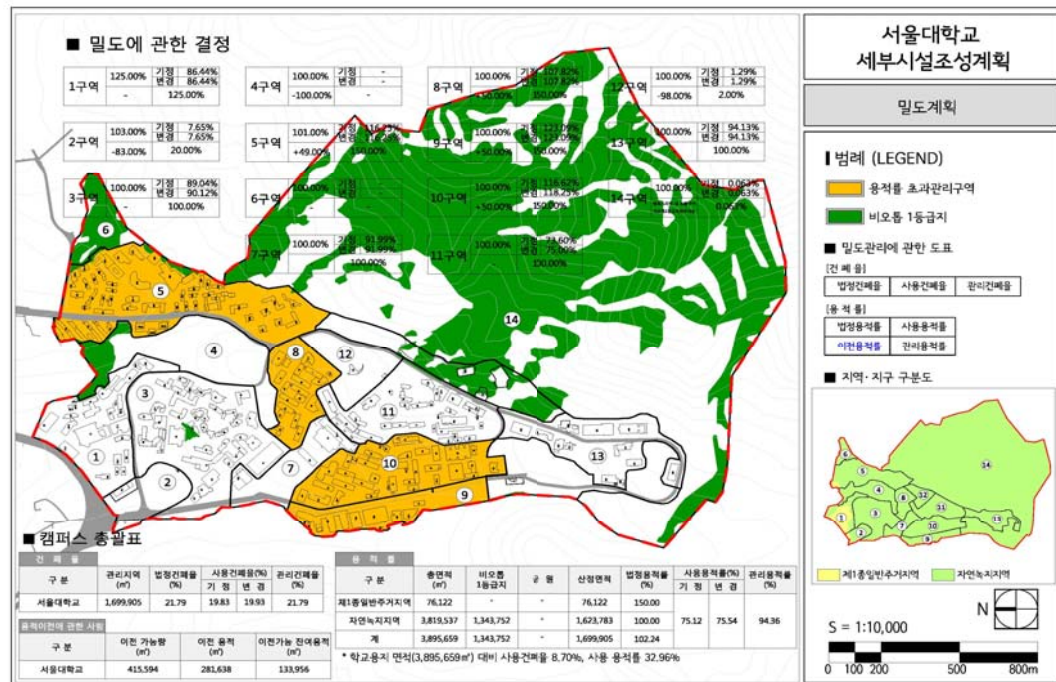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1) 및 관악구 도시계획과(☎ 879-6371)에 관계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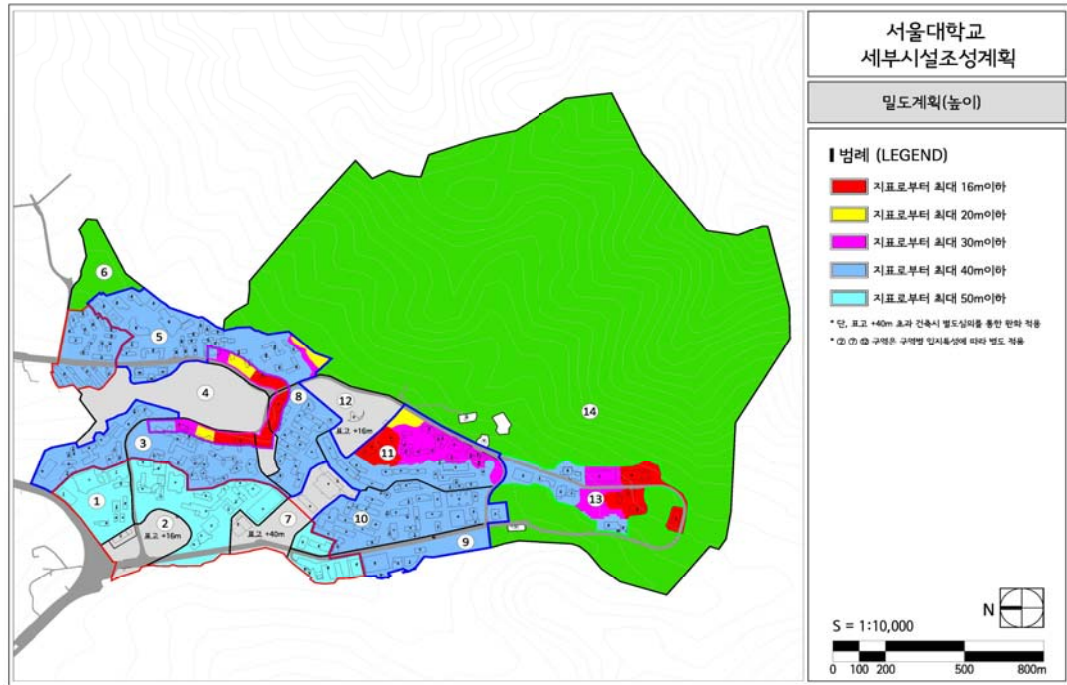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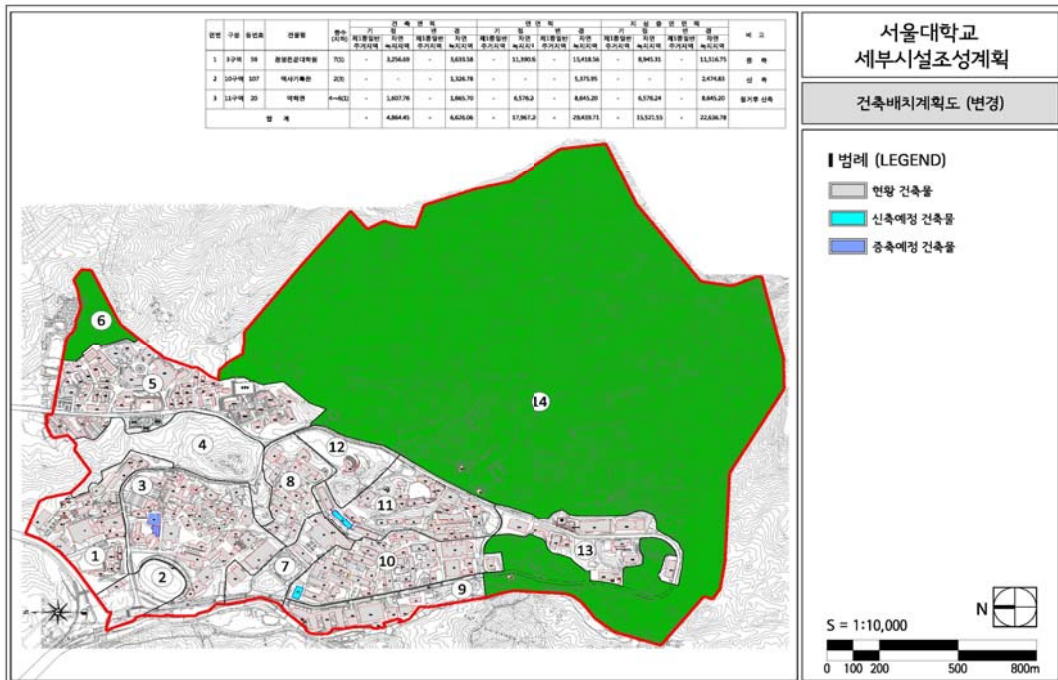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건폐율 · 용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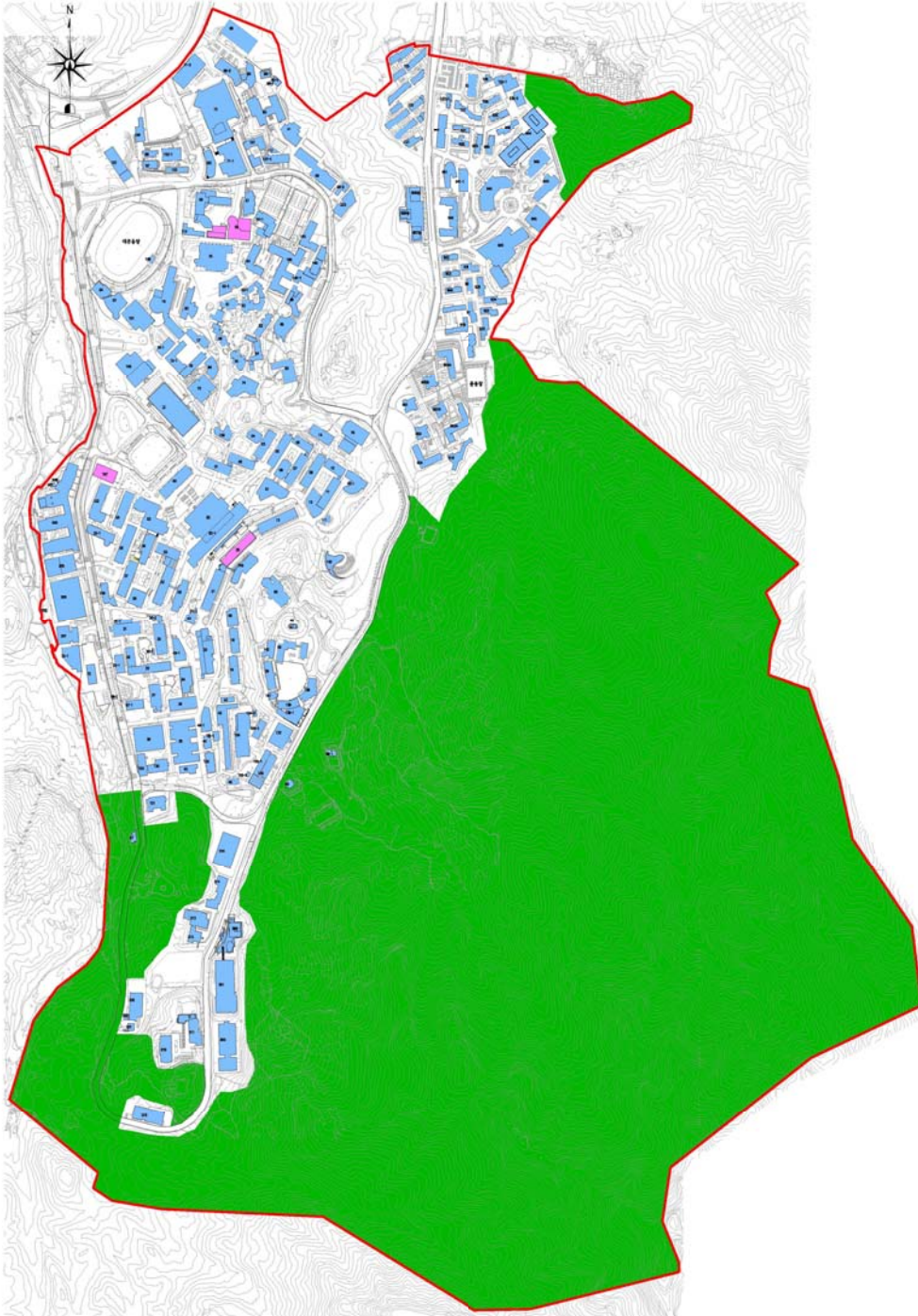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높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계획도



서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도(변경)



서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도(변경)

1. 도시계획(도시계획) 결정요인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2. 구역별 도시계획결정요인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3. 구역별 도시계획결정요인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4. 구역별 도시계획결정요인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5. 구역별 도시계획결정요인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6. 구역별 도시계획결정요인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7. 구역별 도시계획결정요인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8. 구역별 도시계획결정요인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9. 구역별 도시계획결정요인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0. 구역별 도시계획결정요인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1. 구역별 도시계획결정요인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2. 구역별 도시계획결정요인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3. 구역별 도시계획결정요인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4. 구역별 도시계획결정요인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5. 구역별 도시계획결정요인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6. 구역별 도시계획결정요인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7. 구역별 도시계획결정요인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6호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1995.3.10.)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2001.7.10.)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2.)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47호(2015.5.28.)로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후암동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측일대)] 결정(변경), 제2016-13호(2016.1.14.), 2016-408호(2016.12.15.)로 결정(변경)된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I. 결정(변경) 취지

현 서울시교육청사의 업무공간 부족 및 건축물 노후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구) 수도여고 부지로 이전하여 효과적인 교육행정 업무를 도모하고자 함.

II.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	3,490,594.51	-	3,490,594.51	서고시 제1995-53호 (1995.3.10.)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490,594.51	-	3,490,594.51	100.0	
주거지역	소계	2,378,024.51	-	2,378,024.51	68.1	
	제1종일반주거지역	84,972.40	-	84,972.40	2.4	
	제2종일반주거지역	509,722.60	-	509,722.60	14.6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7층이하)	(13,708.40)		(13,708.40)		
	제2종일반주거지역	502,600.00	-	502,600.00	14.4	
	제3종일반주거지역	1,120,517.21	-	1,120,517.21	32.1	
	준주거지역	160,212.30	-	160,212.30	4.6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80,265.00	-	980,265.00	28.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32,305.00	-	132,305.00	3.8	

※ ()는 사업대상지(후암동168외 3필지) 면적임

※ 서고시 제2015-201호(2015. 7. 9.)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내용 반영

※ 서고시 제2016-13호(2016. 1. 14.) 서부이촌동 일대 계획 결정 내용 반영

※ 서고시 제2016-408호(2016. 12. 15.) 서울역특별계획구역 내 서울역파출소 부지 제척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84	갈월동 51-2	갈월동 52-19	일반도로		건고제560 (63.09.19)	
변경	소로	1	18	10	국지도로	84	갈월동 51-2	갈월동 52-19	일반도로		건고제560 (63.09.19)	

※ 상기 시설 외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시설 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11	소로 1-18	- 도로폭원 변경 - B=6m → 10m	공공청사(서울시교육청)의 원활한 차량진출입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폭 추가확보

2) 주차장 결정조서 (변경없음)

3) 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②	학교	고등 학교	후암동 168일대	13,708.4	감)13,708.4	-	교위고5 (87.02.17)	(구)수도 여고교

※ 상기 시설 외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학교시설 변경없음

■ 건축물의 범위

구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건축제한완화	비고
폐지	② ((구)수도여고)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학교	◦ 폐지	◦ 수도여고는 2000. 9. 1.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이전을 완료하여 학교를 폐지하고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서울시교육청을 이전하고자 함

2)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④	공공청사	-	후암동 168일대	-	증)13,214.2	13,214.2	-	서울시교육청

※ 상기 시설 외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 변경없음

■ 건축물의 범위

구분	도면 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m)		비고
신설	④	60이하	190이하	◦ 12층(52m)이하 - 두텁바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30m이내 : 10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④	공공청사	◦ 신설 - 면적 : 13,214.2㎡	◦ 구)수도여고 부지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이전을 위해 공공청사 신설

3)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마. 보건위생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계획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내용에 따름

다. 건축물 높이계획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내용에 따름

라. 건축물 배치계획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상지역	적 용 기 준	대상지역	적 용 기 준	
건축 한계선	◦ 특별계획구역 및 간선교차로	◦ 1m ~ 10m - 두텁바위로(중로1-37호 선)변 : 5m	◦ 특별계획구역 및 간선교차로	◦ 1m ~ 10m - 두텁바위로(중로1-37호 선)변 : 8m	결정도 참조
	◦ 간선가로변	◦ 3m	◦ 간선가로변	◦ 3m	
	◦ 이면부	◦ 1m ~ 3m - 소로3-11호선변 : 2m	◦ 이면부	◦ 1m ~ 3m - 소로1-18호선변 : 5m(지하포함)	
벽면 한계선	◦ 필지폭이 좁은 서울역선형필지 지구	◦ 3m 벽면한계선	◦ 필지폭이 좁은 서울 역선형필지지구	◦ 3m 벽면한계선	

※ 상기 사항 외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배치계획 변경없음

■ 건축한계선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두텁바위로(중로1-37호선)변 건축한계선(5m ⇒ 8m) 변경	◦ 공공청사(서울시교육청)의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보행환경개선 및 녹지공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변경(5m ⇒ 8m)
◦ 서측이면도로(소로1-18호선)변 건축한계선(2m ⇒ 5m) 변경	◦ 공공청사(서울시교육청)의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보행환경개선 및 녹지공간을 위하여 지하 및 지상 건축한계선 변경(2m ⇒ 5m)

마. 건축물 형태 · 색채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공 개 공 지	선형 및 쌈지형	◦ 간선도로변 및 주 요결절부	◦ 한강로변 및 주요교 차로 주변지역 등	◦ 간선도로변 및 주 요결절부	◦ 한강로변 및 주요교차로 주변지역 등 ◦ 공공청사(서울시교육청) 부지 -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연접부 개방형 공개공 지 위치지정 (1개소) - 두텁바위로변 동측 및 서측 모퉁이변 쌈지형 공지 위치지정(2개소)
		◦ 조성지침 - 담장, 계단, 화단, 간판 등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 시 개발주체가 조성 - 공공부문 가로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 식재 권장			
전면공지		◦ 인도부속형 - 폭6m이상 도로변의 건축 선 후퇴부분 - 기존보도 및 차도와 단차없 이 조성 ◦ 차량부속형 - 폭6m미만 도로변의 건축 선 후퇴부분 - 기존차도와 단 차 없이 조성	◦ 대상지 전지역	◦ 인도부속형 - 폭6m이상 도로변의 건축 선 후퇴부분 - 기존보도 및 차도와 단차없 이 조성 ◦ 차량부속형 - 폭6m미만 도로변의 건축 선 후퇴부분 - 기존차도와 단 차 없이 조성	◦ 대상지 전지역
		◦ 조성지침 - 담장, 계단, 화단, 간판 등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 시 개발주체가 조성 - 공공부문 가로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 식재 권장			

※ 상기 사항 외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 내 공지 및 통로계획 변경없음

■ 대지 내 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공공청사(서울시교육청)부지 내 개방형 공개공지 위치지정 신설 -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연접부 개방형 공개공지(1개소) - 두텁바위로변 동측 및 서측 모퉁이변 쌈지형공지(2개소)	◦ 공공청사(서울시교육청) 북측에 개방형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의 공원과 연접하여 조성 ◦ 두텁바위로변 동측 및 서측 모퉁이변에 쌈지형공지를 조성하여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1) 차량출입불허구간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적용대상	적용기준	적용대상	적용기준	
차량 출입 불허 구간	한강로변, 원효로변, 용호로변, 백범로변, 서빙고로변 등	◦ 폭 20m이상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차량출입금지구간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청파로변 소로3-20호선 구간에 주차출입구를 결정하여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④-1의 주차출입 및 차량진·출입을 임시 허용함) ◦ 단, 서울역 선형필지지구의 갈월동 69-56외 2필지에 한하여 한강로변 차량진·출입을 위한 주차출입구(폭6m) 설정(보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차량진·출입구간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한강로변, 원효로변, 용호로변, 백범로변, 서빙고로변 등	◦ 폭 20m이상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차량출입금지구간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청파로변 소로3-20호선 구간에 주차출입구를 결정하여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④-1의 주차출입 및 차량진·출입을 임시 허용함) ◦ 단, 서울역 선형필지지구의 갈월동 69-56외 2필지에 한하여 한강로변 차량진·출입을 위한 주차출입구(폭6m) 설정(보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차량진·출입구간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공공청사 (서울시 교육청)	◦ 두텁바위로(중로1-37호선)와 서측이면도로(소로1-18호선) 교차로 부분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 중로1-37호선변 일부구간 차량진출 허용 - 소로1-18호선변 일부구간 차량진출입 허용	

※ 상기 사항 외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없음

■ 차량출입불허구간 결정(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두텁바위로(중로1-37호선)와 서측이면도로(소로1-18호선) 교차로 부분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 중로1-37호선변 일부구간 행사 및 기타 비상시 차량 진출 허용 - 소로1-18호선변 일부구간 차량 진출입 허용	◦ 교차로 부분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2) 차량출입구간 (변경없음)

구 분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비 고
차량출입구 및 공동주차출입구	◦ 개별필지의 주차 진출입은 6m이상의 연접도로 중 최하위도로에서 진출입 ◦ 간선변 연접한 2필지의 공동주차출입을 통한 간선변 접속 최소화	◦ 전구간 ◦ 간선가로변	

다. 친환경요소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라. 인센티브 항목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없음)

1. 대지의 분할 및 교환에 관한 사항 (획지는 제외)
2. 공개공지 · 쌈지형공원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3.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 변경과 신규 설치
4.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통로의 성격 · 설계계획(보행자 및 차량전용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 설치)
6.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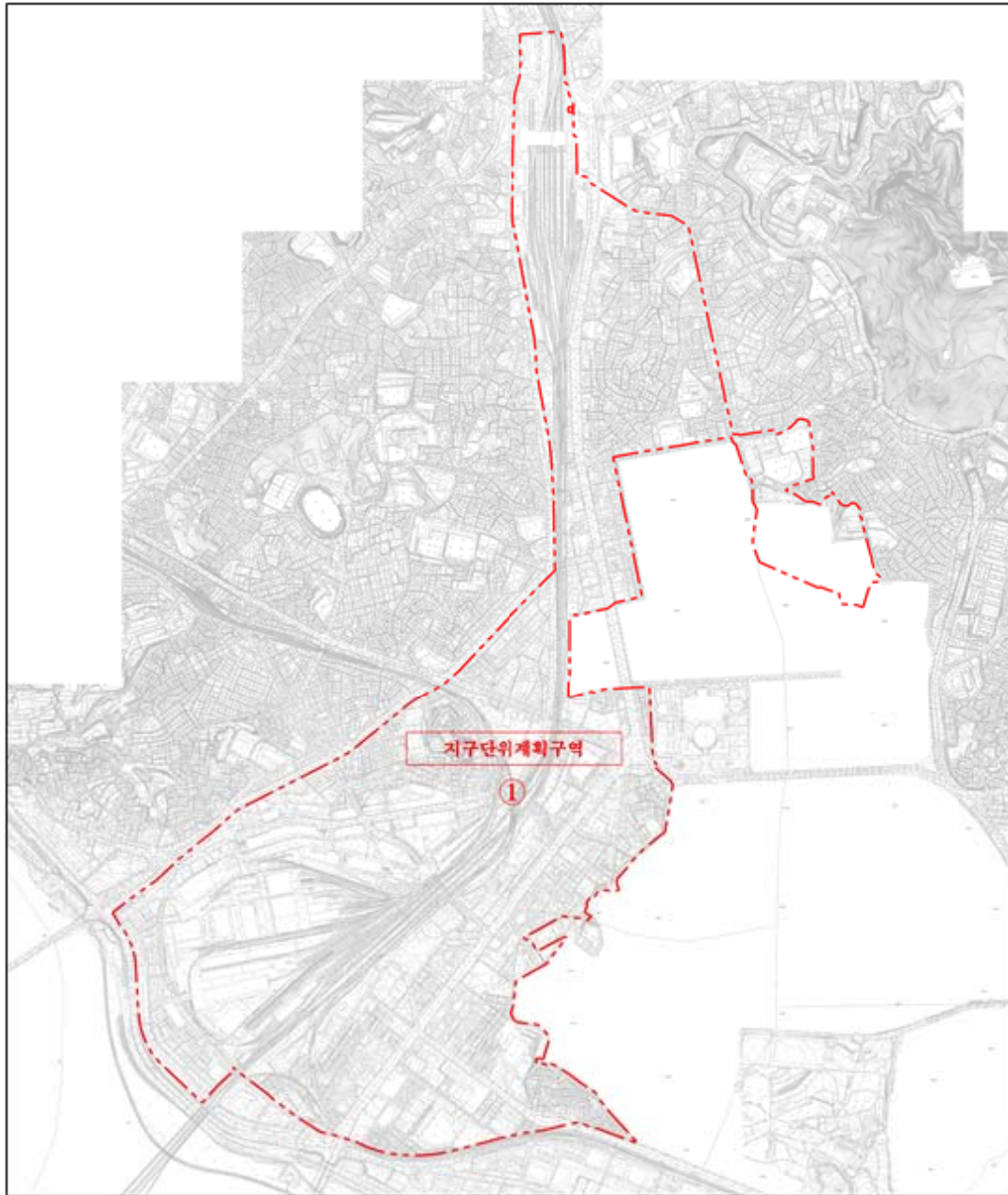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12)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2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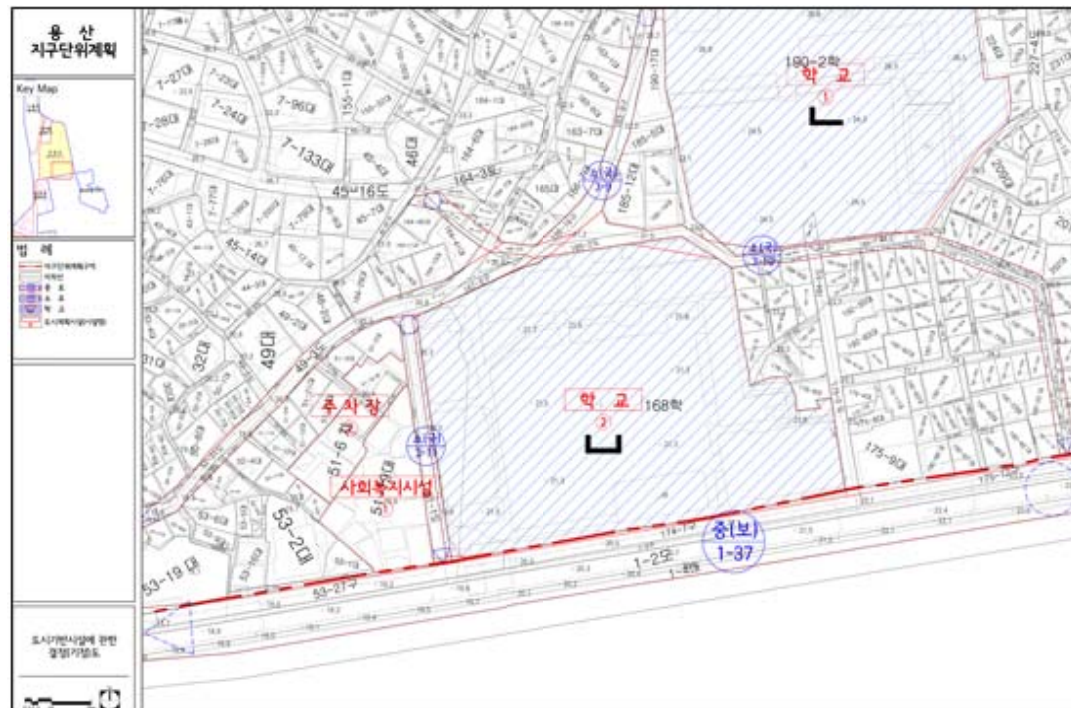


0 100 200 400 8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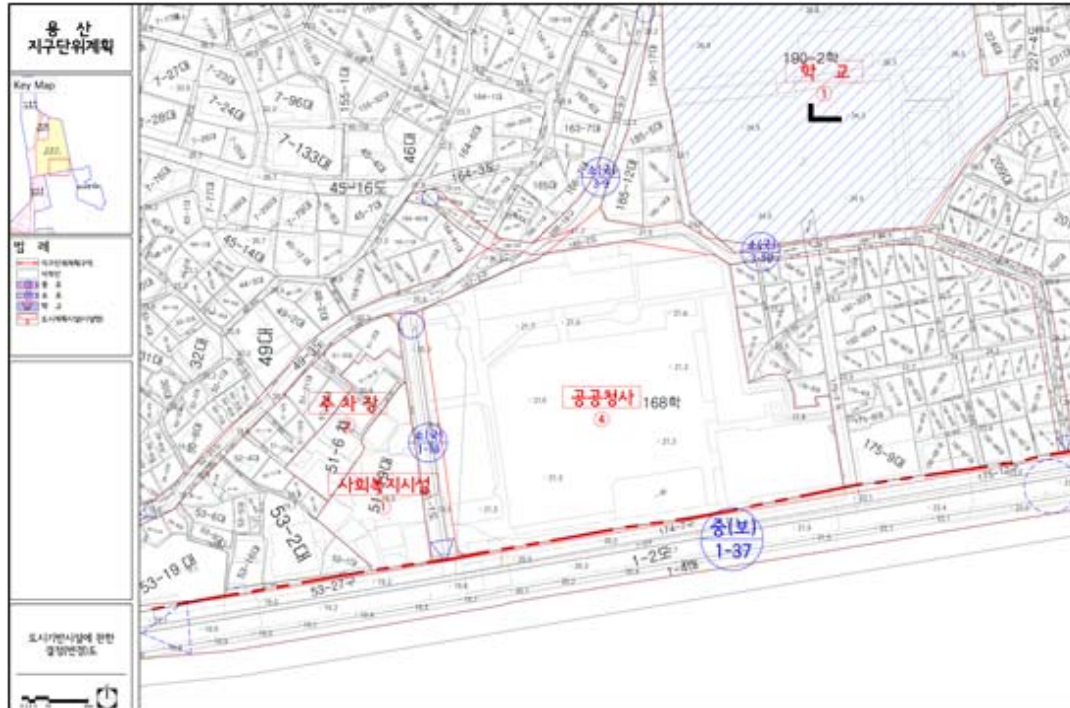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



□ 도시기본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22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7-27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재단 (대표 지은희)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1길 12	-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사업	1,000 (현금 및 물품)	해외·전국	'17.2.24~ '17.12.31
						'17.2.24~ '18.12.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23호

낙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81-272호(1981.7.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05호(2007.9.6)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종로구 창신동 7-26번지 일원 낙산근린공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낙산근린공원

2. 위 치 : 종로구 창신동 7-26번지 일원

3. 면 적 : 198,477.00㎡

4. 조성계획 변경(안)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부지면적(㎡)	시설면적(㎡)	
계		198,477.00	55,550.90	198,477.0	56,700.6	시설면적 증) 1,149.7㎡
기 반 시 설	소 계	41,522.90	41,522.90	41,522.90	41,522.90	
	도 로	29,804.90	29,804.90	29,804.90	29,804.90	
	광 장	11,718.00	11,718.00	11,718.00	11,718.00	
조 경 시 설		557.00	557.00	557.00	557.00	
휴 양 시 설		1,236.00	1,236.00	1,236.00	1,236.00	
운 동 시 설		5,255.00	5,255.00	5,255.00	5,255.00	
교 양 시 설		5,314.00	5,314.00	5,953.60	5,953.60	증) 639.6㎡
편 익 시 설		1,405.00	1,405.00	1,915.10	1,915.10	증) 510.1㎡
관 리 시 설		261.00	261.00	261.00	261.00	
녹지 및 기타		142,926.10		141,776.40		감) 1149.7
시 설 율 (법정 40%)		$(55,550.9 / 198,477.0) \times 100 = 27.99\%$		$(56,700.6 / 198,477.0) \times 100 = 28.57\%$		증) 0.58%
건 폐 율 (법정 10%)		$(631.8 / 198,477.0) \times 100 = 0.32\%$		$(1023.34 / 198,477.0) \times 100 = 0.52\%$		증) 0.20%

○. 주요 변경내용

- 교양시설 : 5,314.0㎡→5,953.6㎡(증 639.6㎡)
- 편익시설 : 1,405.0㎡→1,915.1㎡(증 510.1㎡)
- 녹지 및 기타 : 142,926.1㎡→141,776.4㎡(감 1,149.7㎡)

5.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02-3783-5966)

8. 본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2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 행정절차법 제 14조 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당 사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1	202247	㈜원텔레콤기술 신창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4, 607호(도화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 4인부족)	등록취소 (2017.2.13.)
2	201217	㈜유티티 김영중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8길 41(서초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 4인부족)	등록취소 (2017.2.13.)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8의 13

3.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조용성(☎(02)2133-2897, 전자우편 q369369@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37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1. 업 체 명 : 에스앤씨경영컨설팅 주식회사
2. 대 표 자 : 인묘환(1955.12.20.)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814호
(구로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14호
6. 등록일자 : 2017. 2.28.
7. 전화번호 : 02-6220-622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4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등록취소 전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전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우편이 반송되어 같은 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당 사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1	200991	㈜건강씨피에스 이준영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56길 78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 2인부족)	등록취소
2	111396	㈜신일건업 홍상철	서울 강남구 선릉로 622 (삼성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 2인부족)	등록취소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0조(영업 정지 및 등록취소 등) 및 별표 8의 13

3. 청문실시

- 일시 : 2017. 3. 28.(화) 10:00 ~ 12:00
- 장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무실
- 청문주제자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방송통신주사 김선진

4.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청문 출석을 갈음할 수 있고, 청문참석을 하지 않고 의견서 또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5. 공고기간 : 2017. 3. 3. ~ 2017.3.27.

6.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조용성(☎(02)2133-2897, 전자우편 q369369@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42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 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문설계업1종 (E-2-511) 전문감리업 (S-2-498)	(주)신영전자통신 (110111-1688336)	김성식	서울 서초구 신홍말길 99(내곡동)	2017.02.2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43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 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문설계업 (E-2-509)	주식회사 영진이앤씨 (110111-6239126)	임은옥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2로 184, 307호(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2차)	2017.02.0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50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에 관한 등록 및 말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1	(주)대성아이앤디	김일화	2017.02.01.	서울170012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7,201호 (목동,신한상가)	300,000	신규등록
2	에스디아이알(주)	박철웅	2017.02.03.	서울170013	강남구 테헤란로20길 9,1101호 (역삼동,동궁빌딩)	300,000	신규등록
3	디오이코스(주)	강호필	2017.02.06	서울170014	강남구 논현로28길 33, 3층(도곡동)	500,000	신규등록
4	파로스에셋(주)	문흥식	2017.02.07.	서울170015	영등포구국제금융로2길37,804호 (여의도동,에스트레뉴오피스텔)	300,000	신규등록
5	코아즈건설(주)	정진교	2017.02.13.	서울170016	금천구가산디지털2로 53,607호 (가산동,한라시그마밸리)	600,000	신규등록
6	몰오브공주(주)	한상훈	2017.02.13.	서울170017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4층 (여의도동)	300,000	신규등록
7	(주)소나무홀딩스	곽경수	2017.02.20.	서울170018	광진구 광나루로40길 93 (구의동)	300,000	신규등록
8	(주)다은산업개발	신한철 신현철	2017.02.24.	서울170019	강남구테헤란로44길 5,3층 (역삼동,대아빌딩)	767,750	신규등록
9	(주)대원플러스알앤디	서대원	2017.02.27.	서울170020	송파구 새말로5길 7, 1층(문정동)	300,000	신규등록
10	(주)건영	이형수 주정일	2017.02.27.	서울170021	강남구 테헤란로 306,13층 (역삼동,카이트타워)	10,600,000	신규등록
11	대승산업건설(주)	윤정애	2017.02.09.	서울160040	영등포구 경인로114길 26,101호 (영등포동1가,대승프린스텔)	사업만료	폐업
12	(주)도시피디	임종빈	2017.02.05.	서울080246	강남구 연주로 118,410호 (도곡동우성캐릭터199오피스텔)	사업만료	폐업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133-4684~468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5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2650	2017.2.8.	(주)케이엘네트웍스 윤재환 110111-4727678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에이301호(구로동, 제이앤케이디지털타워)
2	202651	2017.2.8.	(주)가을디에스 신연희, 김택수 110111-3782392	서울 영등포구 63로 32, 1111-2호 (여의도동, 콤비빌딩)
3	202652	2017.2.13.	(주)혜성에스애피 김용우 110111-4262210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5, 3층(용답동, 한전빌딩)
4	202653	2017.2.13.	(주)피엔에이링크 박윤철 110111-2494691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33, 2층(삼성동, 윤곡빌딩)
5	202654	2017.2.16.	키마시스템즈(주) 김구태 110111-615874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18, 1504호(마포동)
6	202655	2017.2.16.	(주)유베이스 허대건, 박대용 110111-1621823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38길 37, (용산동5가)
7	202656	2017.2.16.	(주)에스지테크놀러지 손병학 110111-3514076	서울 송파구 새말로5길 9, 4층(문정동, 칠보빌딩)
8	202657	2017.2.21.	(주)마인드윌 유정규 110111-5725853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42나길 20, 301호(상암동, 위너스하임)
9	202658	2017.2.21.	코리아타코(주) 이재우 110111-1946932	서울 금천구 가마산로 96, 1517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10	202659	2017.2.21.	(주)서우건설산업 이종근 110111-1042649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60, (시흥동)
11	202660	2017.2.24.	석보이엔지(주) 박진훈, 최민기 110111-2860909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50길 24, (한강로2가)
12	202661	2017.2.28.	(주)네이팅텔 박성철 110111-3749847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49, 에이동305호,403호(양평동5가, 우림 라이온스밸리1차)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 2133-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57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법인합병 등록 내역

연번	등록일자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17.2.1.	530108	케이이피엔지니어링(주) 박성진 110111-1723570	서울 중구 동호로 209, 2층(신당동, 태호빌딩)
2	2017.2.6.	201644	(주)후니드 손병재 110111-3135418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2 (가락동)
3	2017.2.6.	111462	(주)현대에이치씨엔 유정석 110111-0842785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9 (서초동, 에이치씨엔빌딩)
4	2017.2.16.	112937	(주)성진정보통신 문계철 110111-6280749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1014호(가산동, 롯데아이티캐슬)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동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등)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02-2133-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71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에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 세입귀속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66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연번	보관일자	채 주	예치사유(적요)	귀속대상금액(원)	비 고
1	2008. 2.15.	나노종합건설	종로구 혜화동 22-65 임시급수보증금	723,720	폐전일:2011. 4.19. (5년이상 경과)
2	2008. 7.10.	이한배	용산구 한남1동 107-18 임시급수보증금	584,712	폐전일:2011. 6.16. (5년이상 경과)
3	2001. 4.11.	중구청토목과	중구 장충동2가 산14-77 임시급수보증금	456,360	폐전일:2010.10.28. (5년이상 경과)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관 건명, 보관기간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부수도사업소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 :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지출담당 (☎ 02-3146-201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74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2017년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모범납세자

가. 선정기준 :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

- 대상기간 : 2014.1.1부터 2016.12.31까지
- 적용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특별징수분 제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재산분)

※ 건 수 :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과세물건수로 산정

나. 선정결과 :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 중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

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서 사망자, 국가 등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법인을 제외하고 선정한 납세자

< 모범납세자 선정 현황 >

구분	계	개인납세자	법인납세자
납세자수	293,552	272,938	20,614

주) 법인납세자 : 단체납세자 등 포함

2. 유공납세자

가. 선정기준 : 모범납세자로서 안정적인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나. 선정결과 : 자치구 추천 납세자 중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서 선정한 납세자

< 유공납세자 선정 현황 >

구분	계	개인납세자	법인납세자
납세자수	196	140	56

주) 법인 : 단체납세자 등 포함

3. 지원혜택

종 류		혜택기간	대상
3년간 세무조사 면제		3년	유공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한함)		2년	유공
공용주차장 1년간 면제혜택		1년	유공
시금고 (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최대 0.5%) * 신규연장재약정시, 상품별 금리우대에 추가 반영	1년	유공 · 모범
	각종 수수료 면제(22종)	1년	유공 · 모범
	환율적용 우대(80%)	1년	유공 · 모범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최대 0.3점)		1년	유공 · 모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가점부여(총점의 5%이내)		1년	유공 · 모범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지원 대상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부여(총점의 5%이내)		1년	유공 · 모범

4. 유지기간 : 2017.3.9. 부터 2018.3.8. 까지
5. 선정결과확인 : 서울시 E-TAX홈페이지, 모바일 앱(STAX)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6. 기타 사항
- 가. 시금고(우리은행)에 대출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대출 신청 시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구청(세무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출력해 제출하면 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나. 기타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세무과(☎ 02-2133-33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75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변경기간)
2017-28	(재)노인의료나눔재단 (대표 황영하)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54	- 저소득층 노인층 인공관절비 지원	1,000 (현금및물 품)	전국	'17.3.6~ '18.2.28
						'17.3.6~ '18.12.31
2017-29	(재)평화재단 (대표 최석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 평화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와 글로벌 리더쉽 양성	150 (현금)	전국	'17.3.6~ '17.12.31
						'17.3.6~ '17.12.31
2017-30	(사)4대악척결범국민운동 본부 (대표 조태임)	서울시 마포구 회우정로 35	- 가정폭력 예방으로 건강한 가정 바로 세우기 등	135 (현금)	전국	'17.3.6~ '17.12.31
						'17.3.6~ '17.12.31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변경기간)
2017-31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대표 김성수)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9길 12	- 이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300 (현금 및 물품)	전국	'17.3.6~ '18.3.5
						'17.3.6~ '19.3.31
2015-27 -1 (변경)	(사)전국재해구호협회 (대표 최학래)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2	- 네팔 지진피해 등 국내·외 재난 이재 민 구호	1,000 (현금)	전국	'15.3.16~ '16.2.29
						'15.3.16 ~ '17.2.28 ('15.3.16 ~ '18.2.28)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2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76호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 공고

「건축법」 제25조의2(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와 관련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관계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처분기준을 「행정절차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건축법 제2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최초의 위반행위 이후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다시 행정처분을 받는 날부터 업무정지 기간을 계산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 허가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公衆)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기간
가. 건축관계자 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 5명이상 사망한 경우 2. 3명이상 4명이하가 사망한 경우 3. 2명이하가 사망한 경우	건축법 제25조의2 제1항	1년 10개월 8개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업무정지기간	업무정지기간
나. 건축관계자 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하도급 받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면서 10억원 이상 재산상 피해 2. 하도급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이면서 5억원 이상 재산상 피해 3. 하도급 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 재산상 피해	건축법 제25조의2 제2항	6개월 4개월 2개월	1년 8개월 4개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다. 건축관계자 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한 경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제외한다)와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한 경우	건축법 제25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1. 최초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한 시정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	3억원
2. 2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2차례 발생한 경우		3개월	3억원
3. 2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3차례 발생한 경우		1년	10억원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7-30호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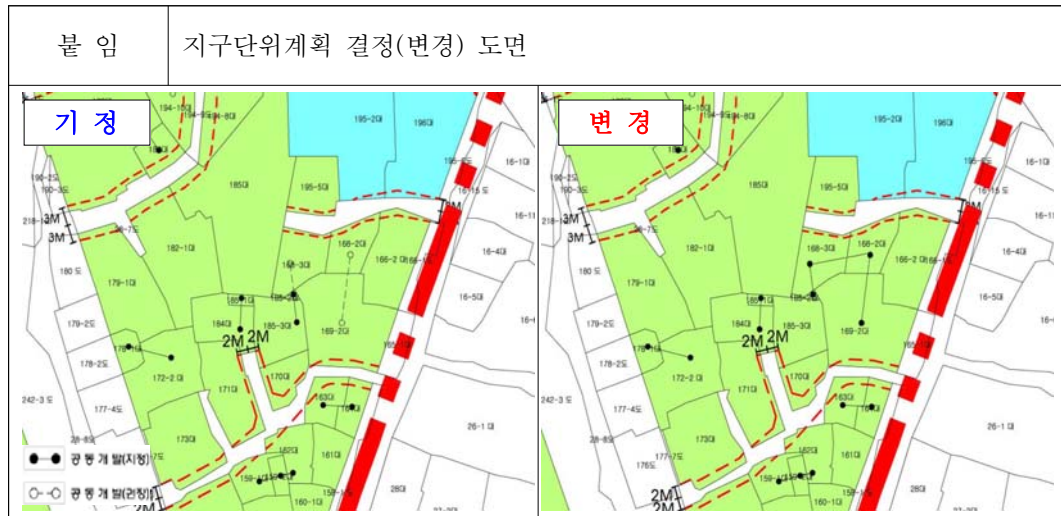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9호(2008.11.20.)로 결정(변경)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로 6가 185-2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2017년 제1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2.20.) 심의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종 로 구 청 장

1.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공동개발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지번	면적(㎡)	구분	지번	면적(㎡)	구분
종로6가 185-3	92.6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 185-3	92.6	단독개발
종로6가 185-2	2.3		-	-	
계	95.9		계	92.6	
-	-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 185-2	2.3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 168-3	83.3		종로6가 168-3	83.3	
종로6가 168-2	62.1		종로6가 168-2	62.1	
종로6가 169-2	203.9		종로6가 169-2	203.9	
계	349.3		계	351.6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 건축과(☎2148-281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고시 제2017-29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신설)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성 동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신설) 조서

1)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신설)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공공공지	용답동 39-15 외 4필지	-	증)447.6	447.6	-	

2) 결정(신설)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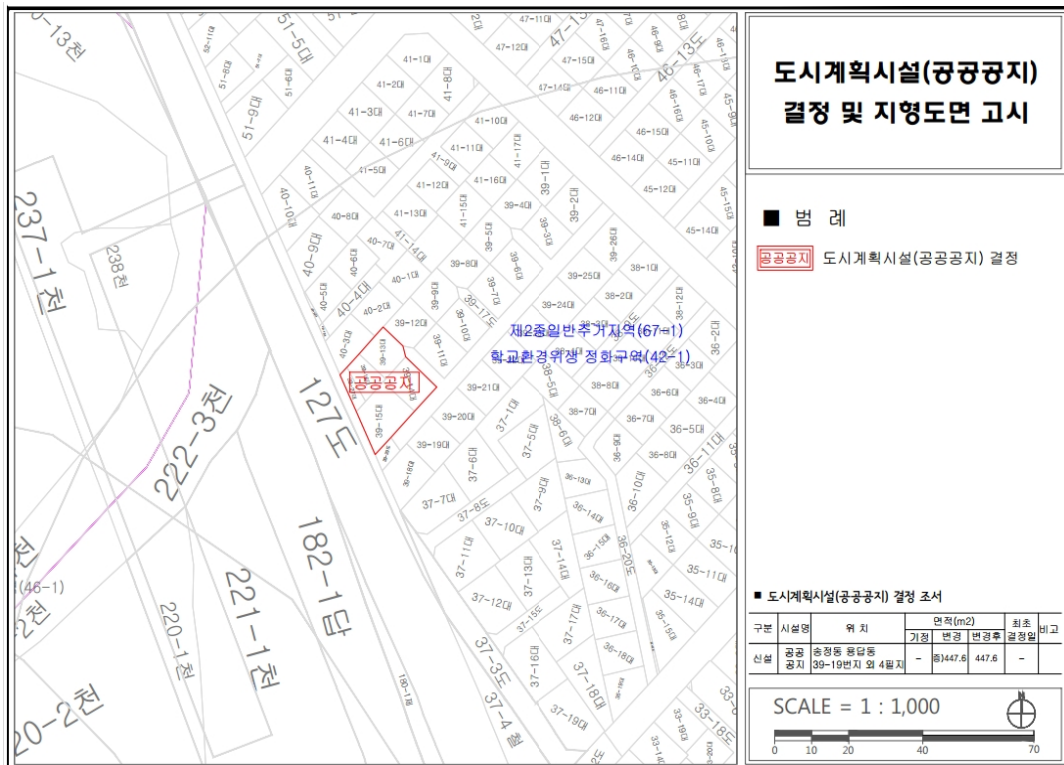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공공공지	• 용답동 39-15 외 4필지(447.6㎡) 공공공지 결정	• 공원녹지가 부족한 용답동 지역에 주민 쉼터 제공

나. 지형도면: 별첨

※ 게재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계획과(☎2286-555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랑구고시 제2017-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47호(1974.04.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중랑구공고 제2017-117호(2017.02.09.)로 열람 공고한 「중화동 148-53~135-29」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

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중랑구청 도로과(02-2094-2691~2695)에 비치하며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9일
중랑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48-53~135-29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중화동 148-53~135-29간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의규모 : 도로확장, 폭 6m, 연장 45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17.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중화동 148-53~135-29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중화동	148-40	대	132	27	양준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58(중화동)	문성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58(중화동)	가압류	
2	중화동	148-42	대	238	25	조운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59길 33 102동 104호(답십리동, 우성그린아파트)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중랑교지점]	근저당권	
3	중화동	148-44	대	99	35	박영숙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활산로 236번길 12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대지권 설정
4	중화동	148-53	대	99	23	한석현(1/2) 박재강(1/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1020번길 32, 101동 1201호(공의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1020번길 32, 101동 1504호(공의문)	관악농협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66(독산동) (신독산지점)	근저당권	
5	중화동	148-59	도	628	156	최관천	성북구 성북동 145-24	성북 세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	압류	
6	중화동	148-163	대	29	29	유승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4동3404호(송도동, 송도 디샵 퍼스트월드)				
7	중화동	135-29	대	132	6	황금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56(중화동)	빅중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56(중화동)	가등기권	

별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중화동 148-53~135-29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중화동	148-53	건물(1층)	연외조	14	한석현(1/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1020번길 32, 101동 1201호(공의문)				
			담장	시멘트 블록조	1식	박재강(1/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1020번길 32, 101동 1504호(공의문)	관악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66(독산동) (신독산지점)		근저당권
			대문	철재	1식						
2	중화동	148-44	담장	시멘트 블록조	1식	박영숙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황산로236번길 12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대문	철재	1식						
			가건물	판넬	7						
3	중화동	148-40	담장	시멘트 블록조	1식	양준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58(중화동)	문성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58(중화동)	가압류	
			대문	철재	1식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중랑교지점]		근저당권
			가건물	스레트	2						

☐ 위 치 도



☐ 현 황 사 진



◆ 성북구고시 제2017-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성북구고시 제2010-49호(2010.06.24.)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최초 결정고시	비고
동소문동7가 5 ~ 7-1간 도로확장공사	동소문동7가 5 ~ 7-1	B = 15m L = 35m	성북구 고시 제2010-49호 (2010.06.24.)	도로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17. 12. 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로과(☎2241-3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동소문동7가 5 ~ 7-1간 도로확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동소문동7가 93-5	대	9.0	9.0	이호연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52, 103동 908호(돈암 동, 한신아파트)				93-2에서 분할
2	성북구 동소문동7가 116-1	대	26.2	26.2	동원고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354 발렌시아 라스 브리사스 알디 29232				116에서 분할
3	성북구 동소문동7가 7-6	대	46.6	46.6	원영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5길 25, 101동 804호 (동소문동7가, 브라운스톤동선아파트)				7-1에서 분할
					김경애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5길 25, 101동 804호 (동소문동7가, 브라운스톤동선아파트)				
					원정호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5길 25, 101동 804호 (동소문동7가, 브라운스톤동선아파트)				
4	성북구 동소문동7가 7-7	대	21.2	21.2	권민석	서울 노원구 동일로237나길 10, 104동 302호 (상계동, 엘지그라빌)	길음2동 세마을금고	서울 성북구 길음동 596-51	근저당권	7-2에서 분할
5	성북구 동소문동7가 7-9	대	10.2	10.2	박순노미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5길 5 (동소문동7가)				7-4에서 분할
6	성북구 동소문동7가 6-1	대	4.1	4.1	최종오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5길 46 (동선동5가)				6에서 분할
					신명옥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5길 46 (동선동5가)				
7	성북구 동소문동7가 7-8	대	0.3	0.3	강병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13나길 116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66 (을지로2가)	근저당권	7-3에서 분할

별첨 조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동소문동7가 5 ~ 7-1간 도로확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동소문동7가 93-2	건물	시멘트 벽돌 스라브	1층 : 11.6 2층 : 11.6	상가	이호연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52, 103동 908호(돈암동, 한신아파트)					
2	성북구 동소문동7가 116	건물	목조 기와지붕	1층 : 17.2(오맹사계) 1층 : 17.7(미용실)	상가	동원고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354 발렌 시아 라스 브리시스 알디 29232					
3	성북구 동소문동7가 7-1	건물	목조 기와지붕	1층 : 26.44	상가	원영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5길 25, 101동 804호 (동소문동7가, 브라운스톤동서아파트)					
4	성북구 동소문동7가 7-2	건물	연와조 스라브	1층 : 20.6 2층 : 20.6	상가	권민석	서울 노원구 동일로237나길 10, 104 동 302호(상계동, 엘지그라빌)	김을2동새 마을금고	서울 성북구 길음동 596-51	근저당권		
5	성북구 동소문동7가 7-4	건물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	1층 : 11.7	상가	박순노미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5길 5 (동소문동7가)					
6	성북구 동소문동7가 6			담장 1식 철제대문 1식		최종오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5길 46 (동선동5가)					
						신명옥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5길 46 (동선동5가)					

◆ 도봉구고시 제2017-3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17-1호(2017.1.5.)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도로)의 설치를 위하여“도봉구 공고 제2017-173호(2017.2.16.)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한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창립초교 삼거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로과(☎2091-4054)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9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봉구 창2동 609-1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도로)사업
- 명칭 :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창립초교 삼거리)

다. 사업규모

- 공공공지 조성 : 278㎡
- 도로 모퉁이(가각) 정비 : 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720번지)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2017.12.31일

바. 지장물건의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토 지 조 서

사 업 명 :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창립초교 삼거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창동 609-13	대지	286.1	286.1	인명학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28 205동302호(상계2차중앙하이츠)	1/1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권

물 건 조 서

사 업 명 :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창립초교 삼거리)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단위	소 유 자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창동 609-13	건 물	철근콘크리트조, 세멘트벽조	311. 2	㎡	인명학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28 205동302호(상계2차중앙하이츠)	국민은행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권	
2		영업권 (1층)		1	식	임진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9-53 선호빌라 301					세입자
3		영업권 (1층)		1	식	박정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86 201동904호(봉천동, 두산아파트)					세입자
4		영업권 (1층)				김종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96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102동901호					세입자
5		영업권 (1층)		1	식	박민규	창2동 629-1 104호					세입자
6		영업권 (1층)		1	식	김동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10라길 70-11 도도펠리스 601호(창동)					세입자
7		영업권 (2층)		1	식	이순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동 1120-18					세입자

◆ 노원구고시 제2017-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상계지구)]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81호(2016.8.11.)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6-25호(2016. 3. 24.)로 실시계획인가고시(최초),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7-101호(2017.2.9.)로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64-1번지 불암산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 상계지구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련 내용은 노원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9일

노 원 구 청 장

■ 사업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164-1번지
-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불암산도시자연공원(상계지구) 조성
- 다. 면 적 : 16,100m²
- 라. 사업의 내용 : 토지 보상 등
- 마.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등 권리명세 : 별첨

■ 고시방법 : 시보게재

■ 열람장소 : 노원구청 공원녹지과(공원기획팀 ☎2116-3943, 노원구 노해로 437)

서
조
지
토

□ 사업명 : 불암산도시자연공원(상계지구) 조성

최초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6. 3. 24.

[illegible]

◆ 강동구고시 제2017-2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무부고시 제449호(1958.11.3.) 및 건교부고시 제198호(1971.4.7.)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와 건교부고시 제147호(1986.4.10.)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광장) 및 건교부고시 제465호(1971.8.6.)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 강동구고시 제2010-41호(2010.06.17.)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강동구고시 제2015-65호(2015.6.11.)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공원, 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강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변경결정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당초	광로	2	5	50 ~ 93	주간선 도 로	13,860	고산자로	상일동 시계	일반 도로	천호대로	내고449 (58.11.3)	폭원 일부 변경, 공원 일부 중복 (일자산공원), 공공공지 일부 중복
변경	광로	2	5	50 ~ 93	주간선 도 로	13,860	고산자로	상일동 시계	일반 도로	천호대로	내고449 (58.11.3)	폭원 일부 변경 공원 일부 중복 (일자산공원), 공공공지 일부 중복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2-5호선	광로2-5호선	-도로폭원 일부 변경에 따른면적 증가 136,586㎡→137,196㎡(증 610㎡)	- 도로시설물 안전성 확보(3단 옹벽→2단 옹벽)를 위한 사면옹벽 끝단 자연사면 추가 및 네일링 반영으로 인한 도로사면 변경 - 생태문화센터부지 보도라인으로 조정 - 분할(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광장 변경결정조서(경미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결정후		
변경	167	광장	교통광장	강동구 상일동 12-3 일대	236,257	증)25	236,282	건설부고시 제147호('86.4.10)	

- 광장(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67	교통광장	당초 : 236,257㎡ 변경 : 236,282㎡ 증) : 25㎡	- 도시계획선 변경 없이 분할(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 위치 변경없이 관련지번 합병(상일동 14-6 → 상일동 12-3으로 합병,1988.6.30.)으로 인한 지번 변경

다) 공원 변경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길동 산86일원	713,416	-	713,416	건교부고시 제465호('71.8.6.)	중복 결정

-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도로시설과 중복 (면적 : 8,622㎡→9,163㎡) 증) 541㎡

라) 공공공지 변경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공공공지	-	강동구 둔촌동 산88일대	1,627		1,627	강동구고시 제2010-41호 ('10.6.17.)	중복 결정

- 공공공지 도로시설과 중복 (면적 : 485㎡→403㎡) 감)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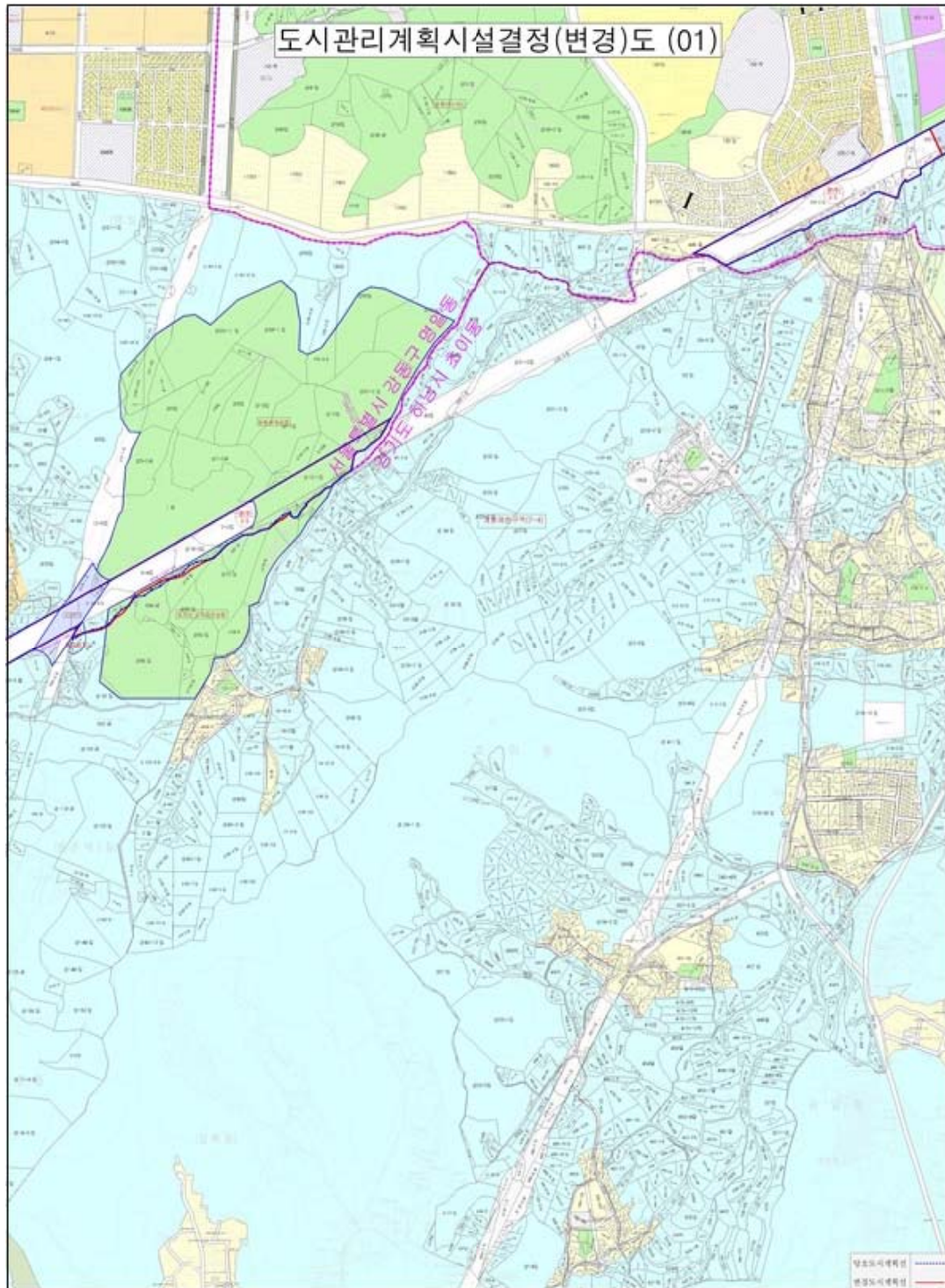
2) 관계도면 : 붙임 도면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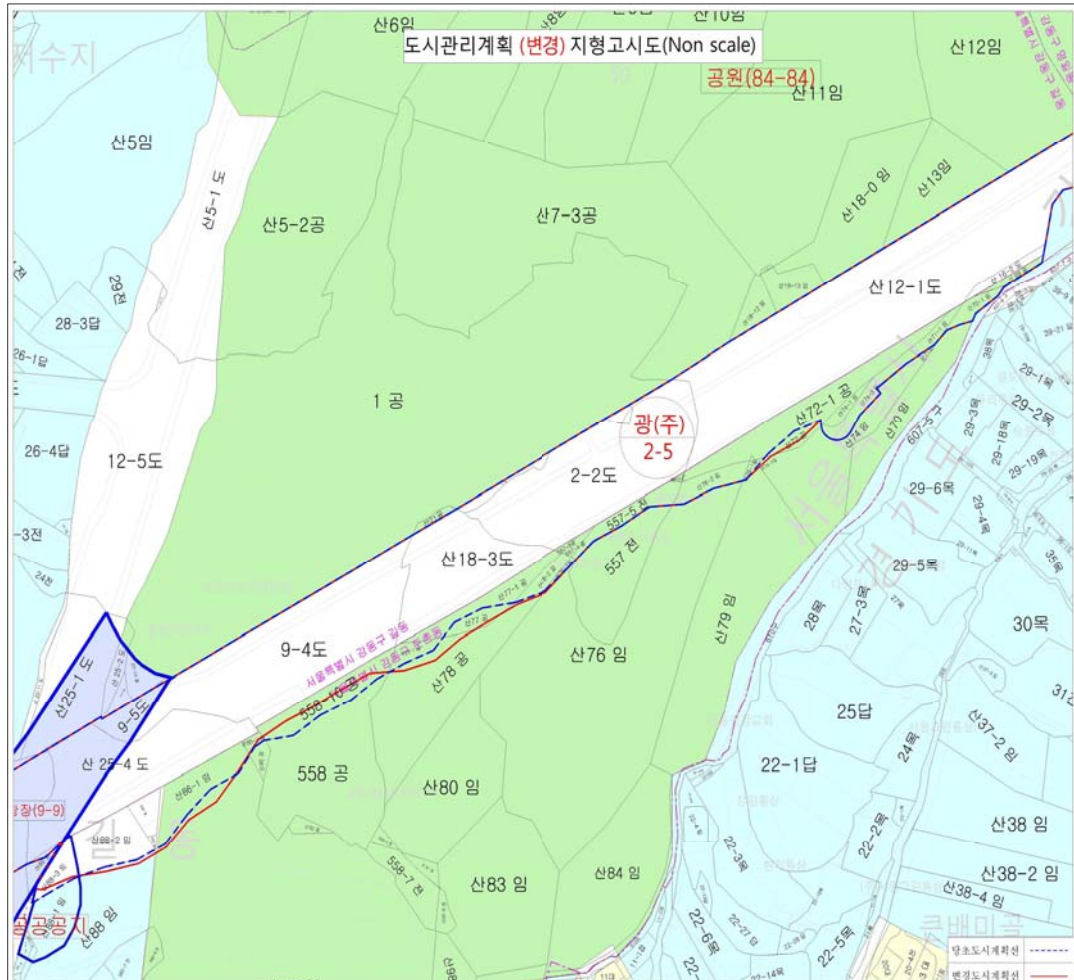
※ 붙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 고시관련 세부내용은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3425-602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





구 공 고

◆ 용산구공고 제2017-199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6호(200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20호(2009.12.1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1호(2013.3.28)로 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7-6호(2017.1.9)로 실시계획 인가된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실시계획을 같은 법률 제9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9일
용 산 구 청 장

가. 인가신청의 요지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국방부 교육센터 건립사업
- 2)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외 28필지
-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4)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9. 12. 30.
- 5)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설면적(㎡)	시설계획			비 고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시설명	
기 정	276,970.9	49,646.04 (17.92%)	336,459.48 (72.61%)	기존 본관동 포함 52동	지상층 연면적 201,097.95㎡
변 경	276,970.9	50,429.16 (18.21%)	343,531.02 (73.84%)	기존 본관동 포함 50동	지상층 연면적 204,514.48㎡

※ 주요 변경내용

- 금회 사업내용
 - 교육센터 신축 : 1동(지하2층/지상4층), 건축면적 1,617.17㎡, 연면적 9,111.22㎡

- 발전기실 등 철거 : 3동(지상2층), 건축면적 834.05㎡, 연면적 2,039.68㎡

나. 열람의 일시 및 장소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2199-7394)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라. 실시계획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2199-7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계				384,064.9	276,970.9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	대지	63,718.0	63,718.0	국방부장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92	도로	2,891.3	782.9	국방부장관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93	도로	543.1	543.1	국방부장관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1	대지	23,655.2	23,655.2	국방부장관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3	대지	2,756.0	2,756.0	국방부장관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4	대지	1,901.5	1,901.5	국방부장관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5	대지	2,199.7	2,199.7	국방부장관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5-1	대지	33,588.9	32,141.6	국방부장관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6	대지	15,299.7	15,259.4	국방부장관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6-4	도로	17,070.3	13,455.4	국방부장관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9	대지	30,476.0	30,476.0	국방부장관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1	대지	17,300.2	7,851.8	국방부장관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2	대지	13,255.2	13,255.2	국방부장관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3	대지	1,510.7	1,510.7	국방부장관	
1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1	대지	58,021.3	3,452.3	국방부장관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4	대지	10,145.4	10,145.4	국방부장관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5	대지	3,071.1	3,071.1	국방부장관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6	대지	416.5	416.5	국방부장관	
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5	대지	1,471.1	109.6	국방부장관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65	대지	4,393.5	3,418.0	국방부장관	
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3-1	대지	39,661.0	14,956.5	국방부장관	
2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3-2	대지	4,934.0	4,934.0	국방부장관	
2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4	대지	7,206.6	7,206.6	국방부장관	
2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5-1	대지	859.7	859.7	국방부장관	
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6-1	대지	10,637.0	10,637.0	국방부장관	
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6	대지	6,576.2	2,114.7	국방부장관	
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7-2	대지	284.9	284.9	국방부장관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7	대지	7,083.7	2,721.0	국방부장관	
29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19-781	도로	3,137.1	3,137.1	국방부장관	

◆ 광진구공고 제2017-23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1(2012.05.03.)호 및 제2016-149(2016.05.26.)호로 결정된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군자동 473-21호 등 3필지 지정용도 관광숙박시설 폐지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68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9일
광진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5)

다. 열람내용

1) 지구단위계획 주요 변경 결정사항

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 조서(폐지)

구분	지정용도	비고
폐지	●관광숙박시설	●군자동 473-21호 등 3필지

■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위 치	용도지역	세부 변경내용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군자동 473-21호 등 3필지	준주거지역	기정	300%	420%	480% 이하
		변경	300%	360%	400% 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정	300%	740%	960% 이하
		변경	300%	630%	800% 이하
	계 (가중평균)	기정	300%	677%	866% 이하
		변경	300%	577%	722% 이하

라. 열람도서 : 생략(광진구청 도시계획과 비치 도서와 같음).

◆ 서대문구공고 제2017-27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연희동 170-9~142-2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 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로 부터 14일간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9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60-1~170-168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연희동 170-9~142-2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규모 : 도로개설(폭 6m, 연장 105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아.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전화 : 330-1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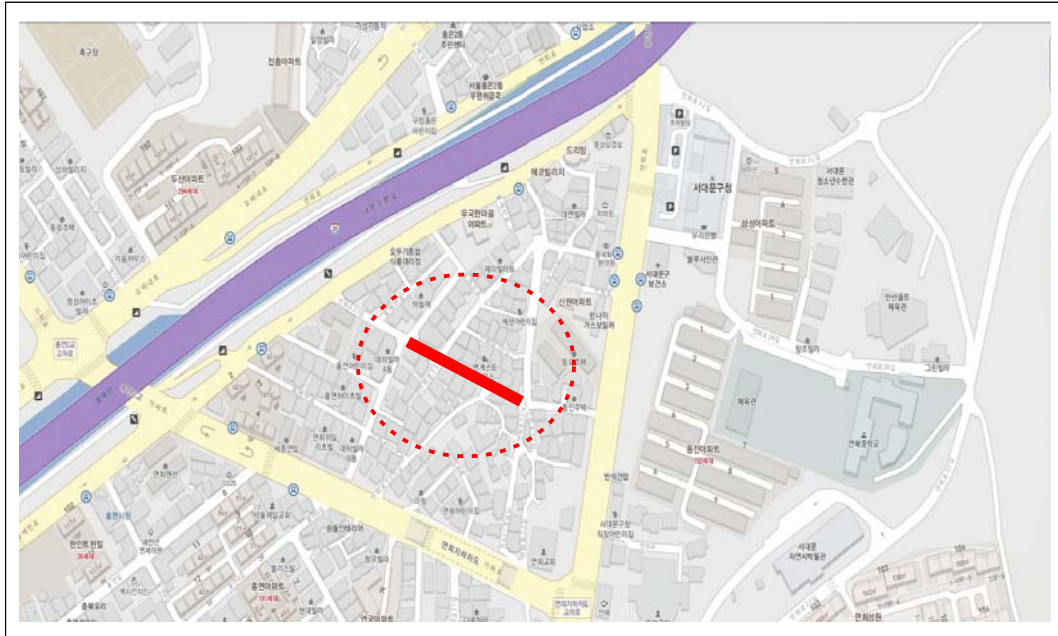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서대문구 연희동 170-9 ~ 연희동 142-2간 도로개설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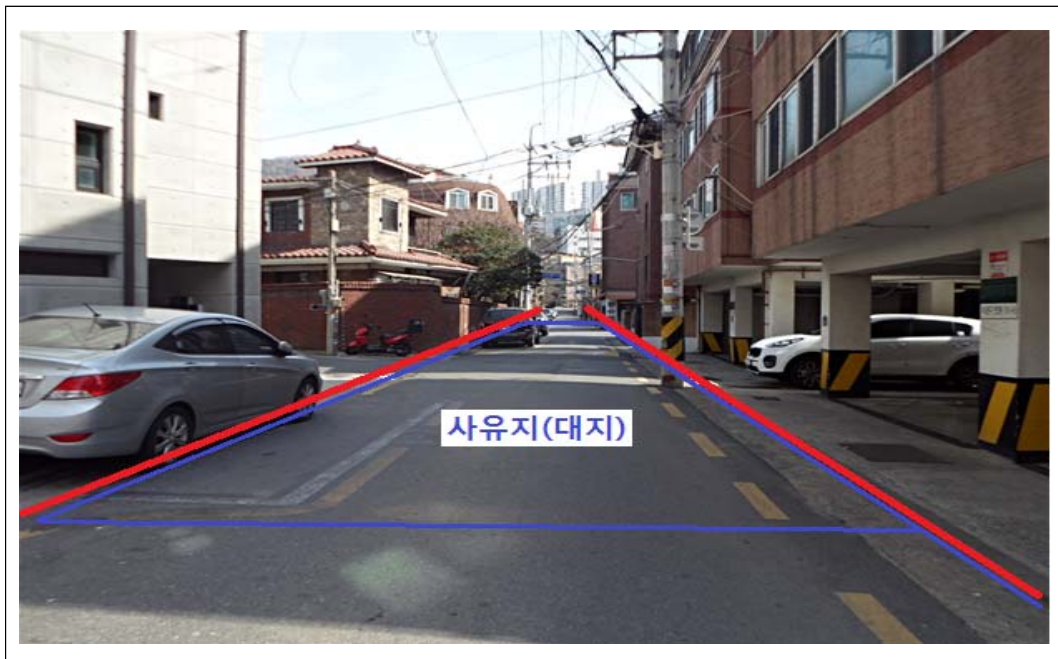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1	서대문구 연희동	160-1	대	36	36	조○○	서대문구 연희동 292-9					
2	서대문구 연희동	162-14	도	251	251	손○○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0 문촌마을신안아파트 1704-1402					
3	서대문구 연희동	170-20	대	53	53	조○○	서대문구 연희동 292-9					
4	서대문구 연희동	170-78	대	331	6	남○○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시청로 264 180동104호(원주더샵아파트)	(주)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66	근저당권	
5	서대문구 연희동	170-167	대	387	279	홍○○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관문리 100					

위 치 도

- 사 업 명 : 연희동 170-9 ~ 142-2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위치 : 연희동 160-1 ~ 170-168(B=6m,L=105m)



현 황 사 진



◆ 구로구공고 제2017-402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429호(1978.08.23.)로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77호(1993.03.24.)로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된 구로구 개봉동 182-1, 개봉동 206-1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녹지)을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9일
구로구청장

가. 열람공고 개요

- 1) 사업시행지 : 구로구 개봉동 182-1, 개봉동 206-1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 사업의 명칭 : 경인제1녹지 토지보상 및 녹지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 335㎡
- 4)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 성명 : 구로구청장
 -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435)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나. 열람기간 및 장소

- 1) 열람기간 : 2017. 3. 1. ~ 3. 14.(14일간)
- 2) 공고일 : 2017. 2. 28.(화)
- 3) 열람장소 : 구로구 공원녹지과(☎02-860-3093) 및 서울시보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071	335					
1	개봉동 182-1	대	1,969	233	(주)대창정공 외 1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82-1	(주)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개봉동지점)	근저당권
2	개봉동 206-1	답	102	102	김용규	서울시 관악구 중앙동 1513-12	(주)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본점)	근저당권

◆ 구로구공고 제2017-40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440호(1979.10.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어, 구로구고시 제2016-17호(2016.2.4)로 실시계획 인가고시하고, 구로구고시 제2016-137호(2016.9.1)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한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기간 추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860-3124)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9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당초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51-76호~551-88호
 ▮ 변경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51-210호~551-88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 당초 : 도로개설 폭8m, 연장25m
 └ 변경 : 도로개설 폭8m, 연장5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토 지 조 서(변경)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당초	변경없음									
1	추가	구로동 551-210	대	103	103	구로구					

물 건 조 서(변경)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당초	변경없음										

◆ **동작구공고 제2017-242호****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2-5호(2012.1.12.)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4-50호(2014.5.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본동 동양중학교 옆 도로개설공사(본동 19-66 ~ 24-2번지)에 대하여 사업완료 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동작구 본동 19-66 ~ 24-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본동 동양중학교 옆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폭 4m, 연장 9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동작구청장(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마. 사업의 착수 및 공사완료일

○ 착수일 : 2014. 10. 13.

○ 완료일 : 2015. 06. 23.

◆ **동작구공고 제2017-243호****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73호(2011.10.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되고, 동작구고시 제2013-75호(2013.06.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한 사당 동 진흥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완료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동작구 사당동 284-35 ~ 288-15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사당동 진흥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B=6m, L=10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동작구청장(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마. 사업의 착수 및 완료일

○ 착수일 : 2013. 11. 15.

○ 완료일 : 2014. 07. 07.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820-9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공고 제2017-35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7-6호(2017.1.5)」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2. 저촉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3)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9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관악구 신림동 산105-24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관악산 신림동 산105-24일대)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라. 사업규모

1)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산105-24번지 일대

2) 면 적 : 3,930㎡

3) 내 용 : 토지보상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조서 : 따로붙임

사.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사항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72,999	3,930							
1	신림동 산105-24	임야	3,914	180	임야	김아*	645624분의 104139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120번길 ***호, ***호(토평동)			
						문인*	645624분의 95220	서울 양천구 목동 913 목동신시가자아파트 ***동 ***호			
						문 *	645624분의 95220	서울 양천구 목동 913 목동신시가자아파트 ***동 ***호			
						박미*	645624분의 23128	서울 양천구 신월동 ***호			
						박*	645624분의 23128	서울 강서구 화곡로24길 **(화곡동)			
						박종*	645624분의 23128	서울 강서구 화곡동 *****호			
						성순*	645624분의 14283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21 큰마을대림아파트 ***-*****	문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70 동부센트레빌 ***-*****	가등기권자
						유민*	645624분의 34692	서울 강서구 화곡로24길 **(화곡동)			
						윤성*	645624분의 10413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겸재로24, ***호 (회경동, 서울가든아파트)			
2	신림동 산105-23	임야	7,207	850	임야	이상*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호	동작 세무서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	
									서울시 관악구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사항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	신림동 산105-20	임야	8,198	350	임야	김부*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			
4	신림동 산105-18	임야	53,680	2,550	임야	진영*	단독지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지하*호(세종로)	오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60, ***동 ***호(자곡동, 강남한양수자인)	가등기권자
									(주)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개봉동지점)	근저당권자
									(주)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개봉동지점)	근저당권자
									서울신용 보증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종로지점)	근저당권자

◆ 서초구공고 제2017-313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12('01.9.25)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2('16.6.23)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35호('16.12.2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원지동체육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9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28번지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원지동체육공원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부지 면적 : 20,923㎡
 나) 시설면적 : 11,063㎡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 나. 열람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다. 열람장소 :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청 제2017-401호

도시계획시설(대모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77. 7. 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7호('16. 11. 10.)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되었으며, 강남구청시 제2016-35호('16. 3. 24.)로 도시계획시설(대모산도시자연공원)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14일간 열람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9일
 강 남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시행지 : 강남구 일원동 437외 8필지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강남구청장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명 칭 :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조성

- 4)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면 적 : 7,129m²
 - 내 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따로붙임
- 나.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 09:00~18:00)
- 다. 열람장소 :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02-3423-6262)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소유권자의 권리명세	
1	강남구 일원동 437	답	1567	1567	불국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442					
2	강남구 일원동 436-25	전	1765	1765	김미화	미국 뉴저지주 채텀 리버에지 드라이브 163	1/2				
					김승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스버데스 에스테이트 비아 아리바 1813	1/2				
3	강남구 일원동 436-19	전	241	241	김승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스버데스 에스테이트 비아 아리바 1813					
4	강남구 일원동 436	전	417	417	한국불교대교종 불국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442					
5	강남구 일원동 436-37	전	99	99	김인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96-10 삼성아파트빌라 101호					
6	강남구 일원동 246-1	답	446	446	강형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7번길 23, 5302동 2204호(이의동, 자연애자이아파트)	1/2				
					강형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12-2, 513동 203호(신봉동, 신봉마을엘지빌라5차)	1/2				
7	강남구 일원동 246-2	전	641	641	강형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7번길 23, 5302동 2204호(이의동, 자연애자이아파트)	1/2				
					강형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12-2, 513동 203호(신봉동, 신봉마을엘지빌라5차)	1/2				
8	강남구 일원동 246-13	전	1702	1702	강형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7번길 23, 5302동 2204호(이의동, 자연애자이아파트)	1/2				
					강형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12-2, 513동 203호(신봉동, 신봉마을엘지빌라5차)	1/2				
9	강남구 일원동 246-17	전	251	251	강형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7번길 23, 5302동 2204호(이의동, 자연애자이아파트)	1/2				
					강형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12-2, 513동 203호(신봉동, 신봉마을엘지빌라5차)	1/2				

지장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구역	수량	실제이용 현황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강남구 일원동 437	비닐하우스	- 5m×23m(앵글) - 4m×24m(앵글)	2동	경작	강복흥	일원동 727-5번지		
2	강남구 일원동 436	비닐하우스	- 4m×8m(앵글)	1동	경작	미상			
3	강남구 일원동 246-2	비닐하우스	- 4m×10m(앵글) - 4m×12m(앵글)	2동	경작	김호식	일원동 652번지(201)		
4	강남구 일원동 246-13	비닐하우스	- 5m×28m(앵글) - 5m×26m(앵글)	2동	경작	미상			

◆ 송파구공고 제2017-323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6호(2015.09.24)로 결정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석촌동 183-2번지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하여, 송파구 공고 제2016- 810호(2016.07.01)로 열람공고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재)열람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9일

송 파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17. 3. 9. ~ 2017. 3.23.(14일간)

2) 열람장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3) 열람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적률 계획 (변경)

적용지역	변 경 전			변 경 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 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지정용도의 용도	지정용도	
준주거지역 (석촌동 183-2)	300%이하	400%이하	-	300%이하	400%이하	480%이하	법정용적률 2배이하
	※ 상한용적률 산식은, [허용용적률×(1+ 1.3×가중치×α) 이내 또는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적용						

주) 지정용도에 대한 허용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건축 시에 한하여 적용하며, 기준용적률로부터 허용용적률 400%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정한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관광호텔 권장용도 중복적용 불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 (신설)

구분	위 치	지 정 용 도	비고
전층	석촌동 183-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1항2호 가목 부대시설(위락시설 제외)	

주) 지정용도(전층)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적용 시에 한하여 적용하며, 향후 타 용도로 용도변경이 불가함

4)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열람편의 및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송파구청 도시계획과(담당 : 이규용/ ☎ 2147-300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3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길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선박 35척 (기선 11척, 부선 24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7.3.1. ~ 2017.3.31.	2017. 2.28.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4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서울지부 (대표 류진수)	마포구 마포나루길 ****	성산대교 ~ 가양대교	동력선 7척(134㎡) - 요트 3척 - 모터보트 3척 - 구조선 1척	수상레저사업	2017.3.2. ~ 2017.12.31	2017. 2.28.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7-4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7. 3. 9. ~ 2017. 3. 22.(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7. 3. 23. ~ 2017. 4. 5.(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승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 목 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74	오*남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	***호 (성수동*가)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81	박*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번길 ***	***호 (파장동)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82	이*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	*-***호 (상암동, 상암 오벨리스크 *자)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90	(주)와이*** 테인먼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컴템포빌딩 ***호 (신사동, 컴템포빌딩)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93	김*용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호 (잠실동)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2	000096	강*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	(망원동)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7-4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7.3.9. ~ 2017.3.22.(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7.3.23. ~ 2017.4.5.(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승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제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7-02	00043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티*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길 ***-*	*층 (잠원동, 삼도빌딩)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7-02	00037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규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구로동)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7-02	000379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규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구로동)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7-02	00038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규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구로동)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7-02	00038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규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구로동)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7-02	00038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규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구로동)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7-02	00038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규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구로동)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7-02	00038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규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구로동)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7-02	000389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규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구로동)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7-02	00045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진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길 **	*동 ***호 (광장동, 워커힐인시아파트)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7-02	00039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규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구로동)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7-02	00040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규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구로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7-02	00040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규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구로동)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7-02	00046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M*S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길 **	***동 ***호 (홍제동, 홍제원현대아파트)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7-02	00046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최***직스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길 **	***호 (역삼동, 삼일프라자오피스텔)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7-02	00047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7-02	00047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휘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룡길 **	C***호 (상암동, 상암 한화 오벨리스크)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7-02	00045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임*우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동**나길 *	(하왕신리동)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7-02	00040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기	수취인불명	경기도 고양시 의안로***번길 ***-*	(뚝내동)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7-02	00043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화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송산로***번길 **	***동 ***호 (별내동, 별내푸르지오)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7-02	00044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길 ***-*	지층 ***호 (연창동, 국제빌라)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7-02	00039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길 ***	(남가좌동)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7-02	00045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남*영	수취인부재	경기도 고양시 동인구 관악대로***번길 ***-***	***호 (비산동, 수자인)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7-02	00047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손*호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원로***번길 **	()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2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테로	2017-02	000479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손*호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원로***번길 **	()
2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테로	2017-02	00043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정*환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후곡*길 *	(시동)
2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테로	2017-02	00044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재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길 ***-	(동교동)
2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테로	2017-02	00044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배*웅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구의동)
2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테로	2017-02	00044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최*섭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길 ***-	B***호 (목동)
3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테로	2017-02	00038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재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가길 **	(주성동)
3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테로	2017-02	000387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광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서구 도림*길 *	(도마동)
3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테로	2017-02	000447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방*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달래로*길 ***-	에이동 ***호 (신월동)
3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테로	2017-02	000452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노*영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차산로**길 ***-	(화양동)
3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테로	2017-02	000392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길 **	***호 (수유동, 쌍용프라임)
3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테로	2017-02	00039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주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엿길 ***-	(공덕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3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 전빛이유관련위반과테로	2017-02	00039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호*선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길 **	(오류동)
3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 전빛이유관련위반과테로	2017-02	000397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유*중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신로**길 *-*	(시흥동)
3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 전빛이유관련위반과테로	2017-02	00039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양*두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길 **-*	(신정동)
3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 전빛이유관련위반과테로	2017-02	000399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호*선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길 **	(오류동)
4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 전빛이유관련위반과테로	2017-02	00040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양*선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묵동중앙로**나길 **	***호 (묵동)
4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 전빛이유관련위반과테로	2017-02	00046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조*훈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	(하월곡동)
4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 전빛이유관련위반과테로	2017-02	000469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숙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호 (신림동)
4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 전빛이유관련위반과테로	2017-02	00047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정*준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번길 *	***호 (범박동)
4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 전빛이유관련위반과테로	2017-02	00048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왕*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	***동 ***호 (행당동, 행당동대림아파트)
4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 전빛이유관련위반과테로	2017-02	00049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호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주시 가운로*길 **	***동 ***호 (가운동, 남양주가운마을휴먼시아* 단지)
4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 전빛이유관련위반과테로	2017-02	000497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배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장교로 ***	***동 ***호 (가좌동, 진주아파트)
4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 전빛이유관련위반과테로	2017-02	00042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배*덕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길 **-*	지흥 좌측호 (신사동)
4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포 전빛이유관련위반과테로	2017-02	00042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J*N X***DE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	(성수동*가)

◆ 서초소방서공고 제2017-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 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 초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업 종(분야)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서울서초 2017-1호	소방시설관리업	안전환경원 주식회사 (110111-5348598)	이 귀 연 (1969.6.17.)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4길 6 [방배동,3층]	2017. 3. 6.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02-594-411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지방항공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정부종합청사 6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185번지 등 8필지
 - 면 적 : 1,59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헬리포트 시설 개선
 - 내 역 : 착륙구역주변동 24등(매립), 헬기장 등대 1개소, 전력인입 관로 등
5. 점용기간 : 2016.12.31.~2021.12.3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6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공사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고양권관리단장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주로 326(신황동 300)
3. 공사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36-1, 487-320, 139, 138번지
 - 면 적 : 영구 12,111㎡, 일시 328.69㎡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일산신도시 및 고양시 일원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매설
 - 내 역 : 상수도관 매설(D=1,500mm) L=3,196m(219m 이설)
5. 공사기간 : <당초>2016.08.01.~2017.01.25.
 <변경>2016.08.01.~2017.03.3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이랜드 크루즈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9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번지선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2번지선
 - 면 적 : 7,438.32㎡(여의도2,980.16㎡,잠실4,458.16㎡) 및
 6,959.78㎡(여의도4,019.98㎡,잠실2,939.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선착장 부대시설 설치
 - 내 역 :
 - 여의도: 가로등 2.7㎡, 주차장 6,978㎡, 매표소 19.44㎡
 - 잠 실: 가로등2.522㎡,주차장 7,376㎡,매표소 19.44㎡
5. 점용기간 : 2017.02.27.~2022.02.26.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4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71-28번지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283-1번지
- 면 적 : 영구 182.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가스관 매설
- 내 역 :
 - 가스관 L=290m, D=500mm

5. 점용기간 : 2016.01.01. ~ 2020.12.31.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